

2022학년도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학교
법인 천 만 학 원

전일고등학교

Jeonil High School

2022학년도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목차

1. 전일 교육공동체 이해	3
2. 학교 규칙	10
3. 2015 개정교육과정	17
4. 학생 생활 규정	23
5. 체험학습 운영 규정	33
6.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출결 · 평가 · 기록 가이드라인	41
7. 기본 시정표	52
8. 교가	53
9. 기타(급식운영)	54

2022학년도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전일 교육공동체 이해



전 일 고 등 학 교

I. 건학 이념

나의 필생의 소망이 인재를 길러
미래에 희망과 꿈을 심는 일이라

여기 모약의 정기 서린 효자 원두에
배움의 초석을 놓았나니

미래를 이끌어갈 역군들이여!

참되고 바른 뜻을 스스로 세워
진리의 길 인간의 길 배우고 익혀

큰 지혜
큰 사랑
큰 힘으로
온 누리 밝히는 희망의 빛이 될 지어라.



II. 학교 상징

교조	백 학
교목	소나무
교화	매 화
교색	청 색

Ⅲ. 2022학년도 학교 현황

1. 연혁

년도	연혁
1981년	덕진고등학교 개교(30학급인가)
1989년	학교법인 천만학원으로 명칭 변경 문종희 이사장 취임
1990년	전일고등학교로 교명 변경
1993년	제2대 정화창 이사장 취임
2019년	제13대 최강열 교장 취임
2022년	제39회 졸업식 (제39회 졸업생 258명 (연인원 15,551명 배출))

2. 교육 지표

‘人格과 實力으로 미래를 주도하는 創造的 人間’ 육성

3. 학교 생활목표

- ▶ 지성(至誠) : 모든 일에 지극한 정성을 다한다.
- ▶ 창조(創造) : 날로 발전하는 시대에 부응하기 위해 새롭게 창조한다.
- ▶ 봉사(奉仕) : “나보다는 우리”라는 의식 속에 국가와 사회에 봉사한다.

4. 교육 목표(추구하는 인간상)

도덕인(道德人)



□ 인성이 바른 사람을 기른다.

- 실천 위주의 인성 교육실시
- 긍정적 자아 개념 형성 지도
- 나눔과 배려를 실천하는 공동체 의식 함양

창조인(創造人)



□ 창의적인 사람을 기른다.

- 학생중심의 다양한 교육과정 운영
- 학생의 자기 주도적 학습 능력 배양
- 탐구과학, 기초 교육의 내실화

미래인(未來人)



□ 미래사회를 주도할 능력있는 사람을 기른다.

- 국가 민족 생존 교육 강화
- 생활영어 교육의 강화
- 정보화 교육 강화
- 미래를 창조하는 진로교육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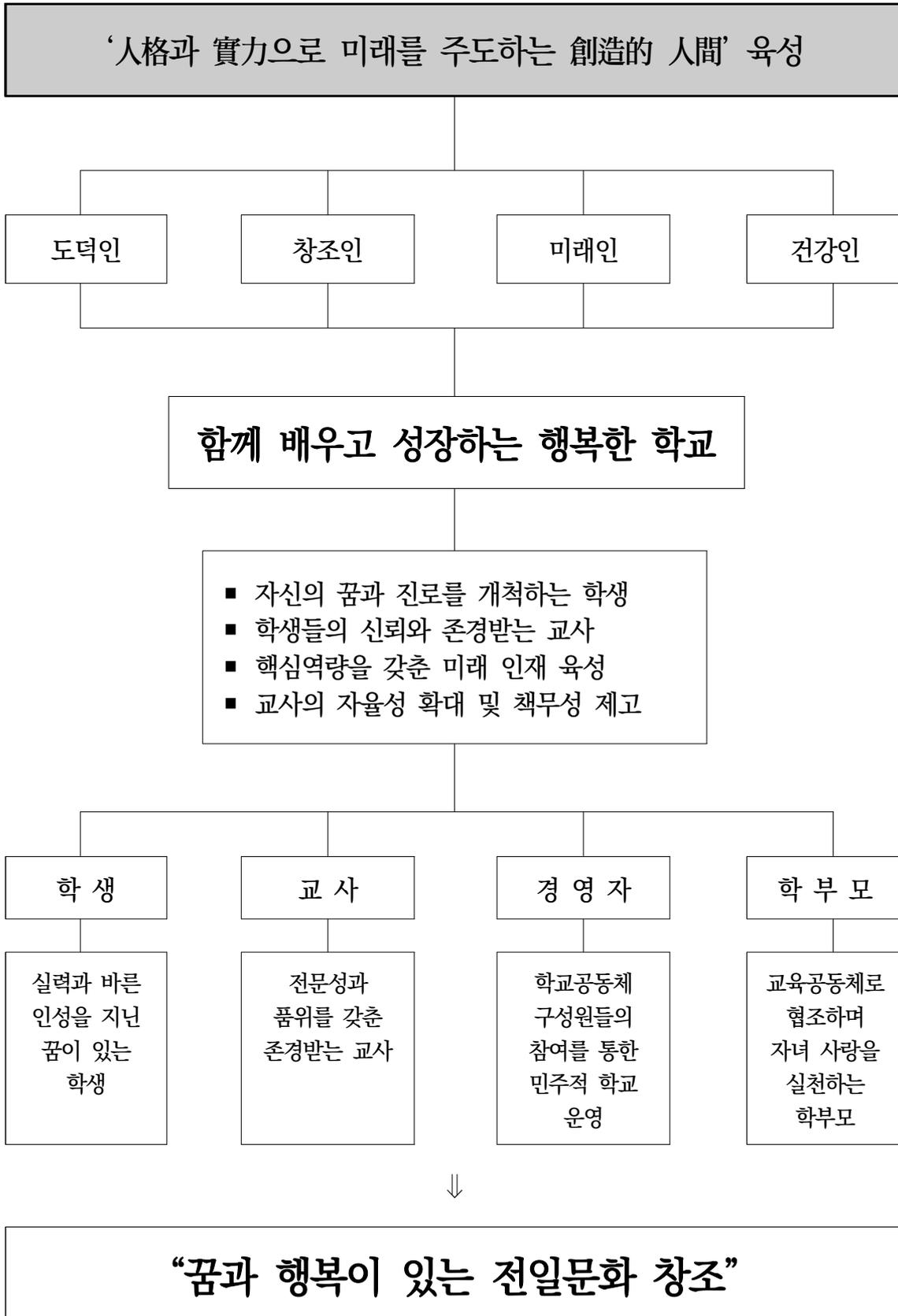
건강인(健康人)



□ 건강한 신체·강인한 의지력을 지닌 사람을 기른다.

- 기초체력의 증진
- 학생의 개성을 존중하는 체육활동
- 부적응학생 상담 강화

5 학교장 경영 방침



6. 교직원 현황

구분	교 무				행 정					총계
	교장	교감	교사	계	실장	일반직	교무 실무사	영양사	계	
현황	1	1	56	58	1	6	2	2	10	68

7. 학생 현황

구분	학년	1	2	3	총계
	계열	공통	공통	공통	
본교	학급수	10	10	10	30
	학생수	225	237	244	706

8. 학급 담임교사

1 年			2 年			3 年		
반	성 명	과목	반	성 명	과목	반	성 명	과목
1	유 명 한	과학	1	이 은 재	국어	1	김 호 형	수학
2	김 종 규	사회	2	박 완 근	수학	2	김 효 미	국어
3	오 현 진	수학	3	안 상 옥	영어	3	김 충 국	수학
4	유 병 철	한국사	4	김 훈	생물	4	박 시 영	체육
5	임 주 현	수학	5	황 정 재	윤리	5	강 홍 현	수학
6	이 예 근	체육	6	김 소 희	지학	6	김 형 관	윤리
7	홍 재 영	국어	7	남 궁 건	체육	7	이 지 훈	국어
8	김 은 총	정보	8	김 기 환	수학	8	이 정 관	지학
9	유 효 종	과학	9	문 승 호	국어	9	여 현 덕	영어
10	노 희 철	영어	10	김 지 연	영어	10	박 성 범	영어

9. 학교 관리자 및 각부서 부장

가. 관리자

구 분	성 명		비 고
이사장님	정 화 창		
교장선생님	최 강 열		
교감선생님	이 준 호		
행정실장님	문 혜 진		

나. 각부서 부장

구 분	성 명		비 고
교무기획부장	이 상 준		
교육연구부장	옹 기 현		
인성인권부장	김 성 주		
창의적체험활동부장	박 유 진		
교육과정부장	문 승 호	국어과부장 겸임	
교육정보부장	박 완 근		
진로상담부장	김 훈	2년부장 겸임	
수학과부장	김 호 형	3년부장 겸임	
외국어과부장	김 지 연		
사회과부장	이 위 영		
과학과부장	유 명 한	1년부장 겸임	
예술체육과부장	남 궁 건		

2022학년도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학교 규칙



전 일 고 등 학 교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학교규칙(이하 “학칙”이라 한다)은 「초·중등교육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9조에 의하여 전일고등학교(이하 “본교”라 한다)의 학사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본교는 전일고등학교라 칭한다.

제3조(위치) 본교는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우전로 249번지에 둔다.

제2장 수업연한·학년·학기 및 휴업일

제4조(수업연한) 수업연한은 3년으로 한다. 다만 학교장의 인정을 받은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5조(학년제) 학년도는 3월 1일부터 다음 해 2월 말까지로 한다. 학생의 진급 또는 졸업은 학년제에 의한다.

제6조(학기) 학기는 매 학년도를 두 학기로 나누되, 제1학기는 3월 1일부터 학교의 수업일수, 휴업일 및 교육과정 운영을 고려하여 학교의 장이 정한 날까지, 제2학기는 제1학기 종료일 다음 날부터 다음 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제7조(휴업일) ① 휴업일은 다음과 같다.

1. 관공서의 공휴일
2. 개교기념일 (6월 1일)
3. 여름 휴가 : 당해 학년도 교육과정운영계획에 의한다.
4. 겨울 휴가 : 당해 학년도 교육과정운영계획에 의한다.
5. 학년 말 휴가 : 당해 학년도 교육과정운영계획에 의한다.
6. 주5일 수업제 운영에 따른 토요일휴업일
7. 학교장이 정한 재량휴업일

② 제1항의 2·3·4·5·7호 휴업일은 매 학년도가 시작되기 전에 제15조1항의 수업일수를 이수하는 범위 내에서 학교운영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학교장이 결정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3·4·5호의 휴가 기간은 수업일수, 교육과정 운영 등을 고려하여 학교장이 조절할 수 있다.

④ 학교장은 제1항 각호 외에 비상 재해 등 기타 긴급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임시휴업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장은 지체없이 관할청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학교의 장은 토요일 또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체육대회나 수학여행 등의 학교 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학생, 학부모 및 교원의 의견을 듣고,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야 한다.

제3장 학급편제·학급수·학생정원

제8조(학급편제) 본교의 학급편성은 같은 학년, 같은 학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교육과정의 운영상 학교의 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2개 학년 이상의 학생을 1학급으로 편성할 수 있다. 또한 전라북도교육감이 정하는 특수 학급을 편성할 수 있다.

제9조(학급수·학생정원) 본교의 학급수 및 학급당 학생정원은 당해연도 학생수용계획에 의하여 전라북도교육감이 정하여 통보한 학급 및 학생정원으로 한다.

제10조(정원의외) 정원의외로 입학 및 전·편입학을 허가할 수 있는 인원은 다음 각 호 1에 해당하는 자로 전라북도교육감이 정하여 통보한 기준에 의한다.

- ① 유급생
- ②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2조제3항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자
- ③ 재입학·전학 또는 편입학하는 자
- ④ 「국가 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 유공자의 자녀
- ⑤ 기타

제4장 교과·수업일수·고사·교외체험학습

제11조(교육과정) 각 학년의 교육과정 및 교과는 교육부 장관이 정한 국가수준의 교육과정과 전라북도교육청의 「고등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에 따라 학교에서 정한 교육과정에 의한다.

제11조의2(특수교육과정) 학교의 장은 특수교육대상자의 장애 영역, 장애의 정도 및 능력 등에 적합한 교육과정을 정할 수 있다.

제12조(수업 운영 방법 등) ① 수업이 시작되는 시각과 끝나는 시각은 학교의 장이 정한다.

②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때에는 학년을 달리하는 학생을 병합하여 수업할 수 있다.

③ 학교의 장은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는 수업을 운영할 수 있다.

④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교류·교환학습, 교외체험학습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본교 「체험학습 운영규정」에 의거 이를 수업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⑤ 학교의 장은 교육의 본질 추구와 학생 개개인의 특기 적성 신장을 위하여 교과활동 외에 다양한 활동을 실시할 수 있다.

제13조(교과) 국어, 도덕, 사회, 수학, 과학, 기술·가정, 체육, 음악, 미술 및 외국어와 교육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과로, 전라북도교육청 「고등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에 따라 교육과정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정한다.

제14조(창의적체험활동) 창의적체험활동은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진로활동영역으로 운영한다.

제15조(수업일수) ① 본교의 수업일수는 매 학년 190일 이상으로 한다.

② 다만, 천재지변, 연구학교의 운영 또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05에 따른 자율학교의 운영 등 교육과정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5조 각 호 기준의 10분의 1 범위에서 수업일수를 감축할 수 있다.

③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교외체험학습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교외체험학습을 수업으로 인정하되 본교의 체험학습 운영규정에 의한다.

④ 재입학·편입·전입생의 수업일수는 다른 학생의 수업일수와 같지 않을 수 있다(법정 수업일수 190일 이상이 안 될 수도 있음).

제16조(체험학습) ①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교환학습, 교외체험학습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본교 체험학습 규정에 의거 이를 수업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② 개인교환학습 인정 기간은 (1개월 이내[4주]), 단체교환학습은 (2주 이내)로 한다.

③ 교외체험학습 출석인정 일수는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을 제외한 연 (30일 이내)로 한다.

④ 기타 교환학습 및 교외체험학습 운영 방침은 본교 「체험학습 운영 세부규정」에 의한다.

제17조(교과학습 평가) ① 평가의 영역, 요소, 방법, 횟수, 기준, 반영비율, 수행평가 세부기준(배점) 등은 전라북도교육청 「학업성적관리시행지침」에 의거 교과협의회에서 정하고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의 장이 결정한다.

② 교과학습발달상황의 평가는 지필평가와 수행평가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③ 지필 평가는 1차 고사와 2차 고사로 구분하여 실시함을 원칙을 한다.

④ 기타 자세한 평가방법 및 평가 관리는 본교 「학업성적관리규정」에 따른다.

제5장 입학·재입학·편입학·전학·휴학·자퇴·수료 및 졸업

제18조(입학 자격) 본교 제1학년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① 중학교를 졸업한 자

②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7조에 의거 중학교를 졸업한 자와 동등의 학력을 인정받은 자

제19조(입학 시기) 입학, 학생의 재입학 또는 편입학의 시기는 본교의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수시로 할 수 있다.

제20조(입학 방법) ① 본교 1학년에 입학하고자 하는 자는 전라북도교육감이 실시하는 고등학교 신입생 배정 방법에 의해 본교에 배정받아야 한다.

②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82조제3항에 해당하는 귀국 학생 등은 학교장이 따로 정하여 선발할 수 있다.

제21조(재입학) 본교를 퇴학한 자로서 재입학을 지원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퇴학 당시 이하 학년에 학교장이 입학할 수 있다.

제22조(전·편입학) ① 학교의 장은 결원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교육과정의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일반계 고등학교, 전문계고등학교, 예·체능계 고등학교, 특수목적 고등학교, 특성화고등학교 및 학력 인정 각종 학교 간의 전학 또는 편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② 편입학할 수 있는 자는 편입학하는 학년의 전 학년까지의 과정을 수료한 자 및 이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이어야 한다.

③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82조제3항과 제92조제2항에 해당하는 자는 학칙 제18조와 제21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입학·전학 및 편입학할 수 있다.

④ 본교의 전·편입학 및 재입학 방법은 전라북도교육청 「전·편입학 및 재입학 업무 시행 계획」을 따른다.

제23조(입학 서류) 본교에 입학하고자 하는 자는 따로 정한 절차에 의하여 입학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4조(전·편입학 서류) ① 전·편입학하려는 자는 전·편입학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원 재적교의 학교생활기록부 전산 자료, 용지에 출력한 출력물, 학교생활기록부 작성에 필요한 각종 보조부 원본을 원 재적교에서 이송받아야 한다.

제25조(휴학) ①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휴학하려는 자는 그 사유서에 내용을 증명할만한 증빙 서류를 첨부하여 보호자 연서로 학교장에게 [휴학원을 출원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휴학을 허가하는 기간은 매회 마다 3월 이상 1년 이하로 하되 3회 이상 거듭할 수 없다.

③ 병역으로 인하여 수학할 수 없는 기간은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를 휴학 기간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④ 휴학한 자가 휴학 기간이 만료되거나 휴학 사유가 소멸하여 복학을 원할 경우 보호자 연서로 [복학원을 출원하여 복학하며, 복학 시기는 제27조제2항의 출석 일수를 충족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수시로 할 수 있다.

제26조(자퇴) 스스로 퇴학(자퇴)하고자 하는 자는 보호자 연서로 그 사유를 기재한 [자퇴원을 제출하되, 이후 절차는 전라북도교육청 「학업중단숙려제 운영계획」에 의한다.

제27조(수료 및 졸업) ① 각 학년의 과정 수료 또는 졸업을 인정함에는 출석 일수와 교육과정 이수 정도를 평가한 결과로 정한다.

② 각 학년 과정의 수료에 필요한 출석 일수는 수업일수의 3분의 2 이상으로 한다.

③ 학교의 장은 학교의 전 과정을 이수하였다고 인정된 자와 교과목별 조기 이수에 의하여 조기 졸업하는 자에게는 학교의 장이 정한 졸업장을 수여한다.

제6장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제28조(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을 위하여 소정의 교과목을 모두 이수하고 이수 인정을 받은 자는 본교의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시행 규정」에 의하여 조기진급 및 조기 졸업을 할 수 있다.

제29조(조기진급 및 조기졸업의 범위대상자 선정·방법)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의 범위·대상자 선정·방법은 본교의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시행 규정」에 따른다.

제30조(교과목별이수인정평가위원회) 개별 교과목의 조기 이수를 관리할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제31조(조기진급·조기졸업·진학평가위원회)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을 평가하기 위하여 조기진급·조기졸업·진학 평가위원회를 구성 운영한다.

제32조(졸업장) 학교장은 학교의 전 과정을 수료하였다고 인정된 자와 교과목별 조기이수에 의하여 조기 졸업하는 자에게는 졸업장을 수여한다.

제7장 비용 징수

제33조(비용 징수) 비용(급식비, 기숙사비, 현장체험학습비, 방과후수업교육비 등) 징수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자문을 거치도록 한다.

제8장 학생 포상 및 징계

제34조(학생 포상) ① 학교의 장은 학업 성적이 우수한 학생뿐만 아니라 개별 교과목에서 탐구력 또는 기능이 뛰어난 학생과 교내의 생활에서 타의 모범이 되는 학생을 발굴, 칭찬, 격려함으로써 학생의 전인적 발달을 도모하고자 포상한다.

② 포상은 교내상과 교외상으로 구분한다.

③ 학생 포상의 종류, 시기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학교의 장이 따로 정한다.

제35조(학생 징계) ① 학교장은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학생에게 다음 각 호의 징계를 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학교장은 학생 또는 학부모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1. 학교 내 봉사 : 5시간 이내, 출석 처리
2. 사회봉사 : 3일 이내, 출석 처리
3. 특별교육 이수 : 3일 이내, 출석 처리
4. 출석정지 : 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로 하고, 미인정 결석으로 처리
5. 퇴학 처분

② 학생을 지도할 때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훈육·훈계 등의 방법으로 하되, 도구나 신체 등을 이용하여 학생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방법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③ 지도교사(담임교사, 교감, 교장 등)의 수차례에 걸친 주의, 훈계, 상담과 지도에도 행동 교정과 발전이 없고 반성을 못하는 학생은 본교 「학생생활규정」에 의거해 징계할 수 있다.

제36조(퇴학 처분) ① 학생이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한하여 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퇴학 처분을 하기 전에 일정기간 동안 가정학습을 하게 할 수 있다.

1. 품행이 불량하여 개전의 가망이 전혀 없다고 인정된 자
2. 기타 학칙을 심대하게 위반한 자

② 학교의 장은 퇴학 처분을 한 때에는 당해 학생 및 보호자와 진로상담을 하여야 하며,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다른 학교 또는 직업교육훈련기관 등을 알선하는 데 노력하여야 한다.

제9장 학생자치 활동의 조직 및 운영

제37조(학생자치 활동의 조직) ① 본교는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고, 학생들이 공동체 속에서 바람직한 역할과 책임의식을 가지고 민주시민으로서 자질을 함양하고 학생의 취미 및 특기 적성 신장을 통한 건전한 학풍을 조성하기 위하여 전일고등학교 학생자치회(이하 “학생회”라 한다)를 둔다.

② 학생자치 활동의 분야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민주적인 학생자치회 활동
2. 학예, 체육, 특기와 취미 신장에 관한 활동
3. 정서함양과 심신 수련을 위한 활동
4. 학교의 전통, 향토의 민속과 전통문화의 계승 발전에 관한 활동
5. 각종 봉사활동
6. 청소년단체 참여 활동
7. 기타 학생 신분에 맞는 활동

제38조(학생자치 활동의 운영) ① 학생자치 활동은 학생의 자율적, 자발적인 운영이 되도록 한다.

② 학생자치 활동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학교기본운영비에서 지원한다.

제39조(학생자치 활동규정) 학생 자치활동에 관한 세부 사항은 본교 「학생회 규정」을 따른다.

제10장 교육 활동 보호

제40조(교권보호) ① 학교의 장은 본교의 교육 활동을 보호하기 위해 교권침해 사안 발생 시 심각성 수준을 판단하고 이에 따른 교육적 및 행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② 교권침해 사안의 발생 시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처리한다.
- ③ 학생에 의한 교권침해 사안은 본교 「학생생활규정」의 관련 세부지침을 따른다.
- ④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조직, 임원의 선출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본교 「학교교권보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을 따른다.

제11장 학교운영위원회

- 제41조(학교운영위원회)** ① 학교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지역의 실정과 특성에 맞는 다양하고도 창의적인 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학교운영위원회를 둔다.
- ② 학교운영위원회의 의원 정수, 선출 시기 및 방식, 구성 비율 등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학교 운영위원회 지침」에 따른다.

제12장 기타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

제42조(출결 사항) 출결 사항은 다음과 같이 처리하며 조퇴, 결과 및 외출은 담임교사의 허가를 얻어 할 수 있다.

- ① 학교 규칙에 의거한 출석할 날짜에 출석하지 않을 때에는 결석으로 처리한다.
- ②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석으로 처리한다.
 1. 천재지변, 법정 감염병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2. 공적 의무 또는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3. 학교장의 허가를 받은 각종 대회 및 행사 참여
 4. 전출·입으로 인한 소요 일수
 5. 교환학습 및 교외체험학습으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
 6. 학교폭력 피해로 인한 치료 기간
 7. 학업중단숙려제 참여 인정 기간
 8.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결석하는 경우
- ③ 학교장이 정한 등교 시간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각'으로 처리한다.
- ④ 학교장이 정한 하교 시간 이전에 하교하는 경우에는 '조퇴'로 처리한다.
- ⑤ 교과수업시간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에는 '결과'로 처리한다.

제43조(경조사 출결) 다음 경조사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에 한하여 출석으로 인정한다. 단, 원격지일 경우 실제 필요한 왕복 소요 일수를 학교장의 결재를 받아 가산할 수 있으며, 경조사 일수에 재량휴업일과 공휴일 및 토요일은 산입하지 않는다.

구 분	대 상	일 수
결 혼	◦ 형제, 자매, 부, 모	1
입 양	◦ 학생 본인	20
사 망	◦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5
	◦ 증조부모, 외증조부모 ◦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3
	◦ 부모의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1

제44조(결석의 종류) 결석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 ① 질병 결석 : 결석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담임교사에게 결석계를 제출한 경우
- ② 미인정 결석 : 태만, 기출, 고의적인 출석 거부, 미인정 어학연수 등
- ③ 기타 결석
 1. 전출로 인한 결석인 경우(전출입 날짜에 의거 출석으로 인정됨)
 2. 학교장이 인정하는 부모 및 가족 봉양, 가사 조력, 부득이한 개인 사정으로 결석하는 경우

- 3. 공납금 미납을 사유로 결석한 경우
- 4. 위 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지 않는 결석의 경우

제13장 장애인 차별금지

제45조(차별금지) ① 학교장은 장애인의 입학 지원 및 입학을 거부할 수 없고, 전학을 강요할 수 없으며, 학교는 장애인이 당해 교육기관으로 전학하는 것을 거절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학교장은 특정 수업이나 실험·실습, 현장견학, 수학여행 등 학습을 포함한 모든 교내외 활동에서 장애를 이유로 장애인의 참여를 제한·배제·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학교장은 취업 및 진로교육, 정보제공에 있어서 장애인의 능력과 특성에 맞는 진로교육 및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④ 학교장 및 교직원들은 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장애인 및 장애인 관련자, 특수교육 교원, 특수교육보조원, 장애인 관련 업무 담당자를 모욕하거나 비하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교육과정에 정한 학업 시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6조(정당한 편의 제공 의무) 학교장은 당해 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장애인의 교육활동에 불이익이 없도록 다음 각 호의 수단을 적극적으로 강구하고 제공하여야 한다.

1. 장애인의 통학 및 교육기관 내에서의 이동 및 접근에 불이익이 없도록 하기 위한 각종 이동용 보장구의 대여 및 수리
2. 장애인 및 장애인 관련자가 필요로 하는 경우 교육보조 인력의 배치
3. 교육과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학습 진단을 통한 적절한 교육 및 평가방법 제공

제47조(개인정보보호) 장애인의 개인정보는 반드시 본인의 동의하에 수집되어야 하고, 당해 개인정보에 대한 무단접근이나 오·남용으로부터 안전하여야 한다.

제48조(문화·예술 활동의 차별금지) 장애인이 문화예술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49조(체육활동의 차별금지) ① 체육활동의 참여를 원하는 장애인을 장애를 이유로 제한·배제·분리·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장애인이 체육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50조(정신적 장애를 가진 학생에 대한 차별금지) 누구든지 정신적 장애를 가진 학생의 특정 정서나 인지적 장애 특성을 부당하게 이용하여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제14장 기숙사

제51조(운영 관리) ① 건학이념에 부합되는 교육 활동을 위하여 학생 기숙사를 운영한다.

② 기숙사의 구성·운영 관리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본교 「기숙사 운영규정」을 따른다.

제15장 학칙 개정

제52조(학칙 개정 절차) ① 학칙은 교무회의 심의를 받아 제출된 최종 시안을 학교운영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개정한다.

② 학칙 개정안은 20일 이상 학교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53조(시행규칙) ① 이 학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학교의 장이 따로 정한다.

② 학칙에 없는 사항은 초·중등교육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기타 지침, 훈령 및 제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부칙

제1조 이 학칙은 공포한 날(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022학년도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2015 개정 교육과정



전 일 고 등 학 교

I. 2015 개정 교육과정(고등학교)의 특징

1. 문·이과 통합

- 학생들의 균형적인 발달과 유연하고 다양한 진로 선택을 위해 문·이과를 통합하였습니다.

2. 공통 과목 신설

- 모든 학생의 기초 소양 함양과 기초 학력 보장을 위해 공통 과목※을 신설하였습니다. 특히 사회와 과학 교과는 ‘통합사회’와 ‘통합과학’ 등의 핵심개념을 중심으로 한 융합과목을 도입했습니다.
※ 국어, 수학, 영어, 한국사, 통합사회, 통합과학, 과학탐구실험

3. 다양한 선택 과목 이수

- 학생들은 단순히 문과와 이과로 구분되어 수업을 듣는 것이 아니라 공통 과목 이수 후 자신의 진로와 적성에 따라 다양한 선택 과목(일반 선택, 진로 선택※)을 이수하게 됩니다.
※ 일반 선택 과목: 교과별 학문의 기본 이해를 바탕으로 한 과목
진로 선택 과목: 교과 융합학습, 진로 안내학습, 교과별 심화학습, 실생활 체험학습 등이 가능한 과목

4. 교실 수업 개선

- 중복된 학습 내용이나 단편 지식 등을 교과별 핵심개념과 원리 중심으로 정선하여 감축하고, 학생의 발달 단계와 국제적 기준(Global standards)을 고려하여 성취기준 이수시기 이동, 학습 내용의 삭제·신설·통합 등을 통해 적절한 학습 수준을 제시함으로써 학습 부담이 줄고 교실 수업이 개선됩니다.

5. 국·수·영 비중 6단위 감축

- 기초 교과 영역 이수 단위를 교과 총 이수 단위의 50%를 넘지 못하게 하고, 기초 교과 영역에 한국사(6단위)를 포함함으로써 실질적으로 국어, 수학, 영어 비중이 2009 개정 교육과정보다 6단위 감축되었습니다.

6. 과목의 이수

- 공통 과목은 모든 학생이 이수해야 하며, 공통 과목 이수 후 학생들은 자신의 진로 희망에 따라 선택 과목을 이수할 수 있습니다. 공통 과목은 증배없이 2단위 범위 안에서 감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습니다. 선택 과목의 기본 단위 수는 5단위이며, 일반 선택 과목은 2단위, 진로 선택 과목은 3단위 범위 안에서 증감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습니다.
- 학교에서는 교육과정 편성·운영 시 학생의 선택에 따라 진로 선택 과목을 3과목 이상 이수하도록 해야 합니다.
- 일반 고등학교와 자율 고등학교의 교육과정은 보통 교과 중심으로 편성하되, 필요에 따라 전문 교과의 과목을 개설할 수 있습니다.
- 한국사는 6단위 이상 이수하되 2개 학기 이상 편성하고, 과학탐구실험은 2단위 편성·운영을 원칙으로 하되, 과학 계열, 체육 계열, 예술 계열 고등학교의 경우 학교 실정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 학교는 필요에 따라 교과의 총 이수 단위(180단위)를 증배 운영할 수 있지만 특목고의 경우에는 전문 교과 I의 과목에 한해 증배할 수 있습니다.

	교과 영역	교과(군)	공동 과목 (단위)	필수 이수단위	자율편성단위
교과(군)	기초	국어	국어(8)	10	학생의 적성과 진로를 고려하여 편성
		수학	수학(8)	10	
		영어	영어(8)	10	
		한국사	한국사(6)	6	
	탐구	사회 (역사/도덕 포함)	통합사회(8)	10	
		과학	통합과학(8) 과학탐구실험	12	
	체육-예술	체육		10	
		예술		10	
	생활 교양	기술가정/제2외국어/한문/ 교양		16	
	소계				
창의적 체험활동				24(408시간)	
총 이수단위				204	

- 일반 고등학교에서도 전문 교과(전문 교과 I·II) 과목을 개설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선택 과목 간 위계가 있는 교과의 경우 전문 교과를 개설하기 전에 보통 교과의 선택 과목(일반 선택·진로 선택 과목)을 먼저 이수해야 합니다.
- 전문 교과 중 기초 교과 영역의 과목※을 이수하는 경우, 이를 포함하여 기초 교과 영역의 이수 단위 총합이 교과 총 이수 단위의 5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예: 심화 수학 I, 심화 영어 회화 I 등

7. 교과목 안내

교과 영역	교과(군)	공동 과목	선택 과목	
			일반 선택	진로 선택
기초	국어	국어	화법과 작문, 독서, 언어와 매체, 문학	실용 국어, 심화 국어, 고전 읽기
	수학	수학	수학 I, 수학 II, 미적분, 확률과 통계	실용 수학, 기하, 경제 수학, 수학과제 탐구, 인공지능 수학
	영어	영어	영어 회화, 영어 I, 영어 독해와 작문, 영어 II	실용 영어, 영어권 문화, 진로 영어, 영미 문학 읽기

	한국사	한국사				
탐구	사회 (역사/도덕 포함)	통합 사회	한국지리, 세계지리, 세계사, 동아시아사, 경제, 정치와 법, 사회·문화, 생활과 윤리, 윤리와 사상		여행지리, 사회문제 탐구, 고전과 윤리	
	과학	통합과학, 과학 탐구 실험	물리학 I, 화학 I, 생명과학 I, 지구과학 I		물리학II, 화학II, 생명과학II, 지구과학II, 과학사, 생활과 과학, 융합과학	
체육 · 예술	체육		체육, 운동과 건강		스포츠 생활, 체육 탐구	
	예술		음악, 미술, 연극		음악 연주, 음악 감상과 비평, 미술 창작, 미술 감상과 비평	
생활 · 교양	기술 가정		기술 가정, 정보 인공지능기초		농업 생명 과학, 공학 일반, 창의 경영, 해양 문화와 기술, 가정 과학, 지식 재산 일반	
	제2 외국어		독일어 I 프랑스어 I 스페인어 I 중국어 I	일본어 I 러시아어 I 아랍어 I 베트남어 I	독일어II 프랑스어II 스페인어II 중국어II	일본어II 러시아어II 아랍어II 베트남어II
	한문		한문 I		한문II	
	교양		철학, 논리학, 심리학, 교육학, 종교학, 진로와 직업, 보건, 환경, 실용 경제, 논술			
전문 교과 I	과학 계열	심화 수학I, 심화 수학II, 고급 수학I, 고급 수학II, 고급 물리학, 고급 화학, 고급 생명과학, 고급 지구과학, 물리학 실험, 화학 실험, 생명과학 실험, 지구과학 실험, 정보과학, 융합과학 탐구, 과학과제 연구, 생태와 환경				
	체육 계열	스포츠 개론, 체육과 진로 탐구, 체육 지도법, 육상 운동, 체조 운동, 수상 운동, 개인·대인 운동, 단체 운동, 체육 전공 실기 기초 등				
	예술 계열	음악이론, 음악사, 시창 청음, 음악 전공 실기, 합창, 합주, 공연실습, 미술 이론, 미술사, 드로잉, 평면 조형, 입체 조형, 매체 미술, 미술 전공 등				
	외국어 계열	심화 영어 회화I, 심화 영어 회화II, 심화 영어I, 심화 영어II, 심화 영어 독해I, 심화 영어 독해II, 심화 영어 작문I, 심화 영어 작문II, 전공 기초 독일어 등				
	국제 계열	국제 정치, 국제 경제, 국제법, 지역 이해, 한국 사회의 이해, 비교 문화, 세계 문제와 미래 사회, 국제 관계와 국제기구, 현대 세계의 변화, 사회 탐구 방법, 사회과제 연구				
전문 교과 II	국가직무능력표준(NCS)과 연계된 17개 교과(군) 47개 기준학과에 따라 전문 공통과목, 기초과목, 실무과목으로 구분(특성화 고등학교와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대상 교과)					

II. 2022학년도 교육과정 편제표

1. 2022학년도 전학년 교육과정 편제표

학교번호			9					학교명				전일고등학교			
교과 영역	교과(군)	과목	과목 유형	이수 구분	선택 과목수	기준 단위	1학년		2학년		3학년		운영 단위	개설여부	
							1학기	2학기	1학기	2학기	1학기	2학기			
기초	국어	국어	공통	지정	1	8	4	4					8	개설	
기초	수학	수학	공통	지정	1	8	4	4					8	개설	
기초	영어	영어	공통	지정	1	8	4	4					8	개설	
기초	한국사	한국사	공통	지정	1	6	3	3					6	개설	
탐구	사회(역사/도덕 포함)	통합사회	공통	지정	1	8	3	3					6	개설	
탐구	과학	통합과학	공통	지정	1	8	3	3					6	개설	
탐구	과학	과학탐구실험	공통	지정	1	2	1	1					2	개설	
체육·예술	체육	체육	일반선택	지정	1	5	2	2					4	개설	
체육·예술	예술	음악	일반선택	지정	1	5	2	2					4	개설	
체육·예술	예술	미술 창작	일반선택	지정	1	5	1	1					2	개설	
생활·교양	기술·가정	기술·가정	일반선택	선택11	1	5	3	3					6	개설	
생활·교양	기술·가정	정보	일반선택	선택11	1	5	3	3					6	개설	
기초	국어	문학	일반선택	지정	1	5			5				5	개설	
기초	수학	수학 I	일반선택	지정	1	5			4				4	개설	
기초	수학	수학 II	일반선택	지정	1	5				4			4	개설	
기초	영어	영어 I	일반선택	지정	1	5			5				5	개설	
기초	영어	영어 II	일반선택	지정	1	5				5			5	개설	
체육·예술	체육	운동과 건강	일반선택	지정	1	5			2	2			4	개설	
체육·예술	예술	음악 연주	진로선택	지정	1	5			1	1			2	개설	
기초	국어	화법과 작문	일반선택	선택3	1	5				5			5	개설	
기초	국어	언어와 매체	일반선택	선택3	1	5				5			5	개설	
탐구	사회(역사/도덕 포함)	한국지리	일반선택	선택8	3	5			3	3			6	개설	
탐구	사회(역사/도덕 포함)	동아시아사	일반선택	선택8	3	5			3	3			6	개설	
탐구	사회(역사/도덕 포함)	사회·문화	일반선택	선택8	3	5			3	3			6	개설	
탐구	사회(역사/도덕 포함)	생활과 윤리	일반선택	선택8	3	5			3	3			6	개설	
탐구	과학	물리학 I	일반선택	선택8	3	5			3	3			6	개설	
탐구	과학	화학 I	일반선택	선택8	3	5			3	3			6	개설	
탐구	과학	생명과학 I	일반선택	선택8	3	5			3	3			6	개설	
탐구	과학	지구과학 I	일반선택	선택8	3	5			3	3			6	개설	
생활·교양	제2외국어	일본어 I	일반선택	선택12	1	5			3	3			6	개설	
생활·교양	제2외국어	중국어 I	일반선택	선택12	1	5			3	3			6	개설	
체육·예술	체육	운동과 건강	일반선택	지정	1	5					1	1	2	개설	
체육·예술	예술	미술 감상과 비평	진로선택	지정	1	5					1	1	2	개설	
생활·교양	한문	한문 I	일반선택	지정	1	5					2	2	4	개설	
기초	국어	화법과 작문	일반선택	선택3	1	5				5			5	개설	
기초	국어	언어와 매체	일반선택	선택3	1	5				5			5	개설	
기초	국어	실용 국어	진로선택	선택3	1	5				5			5	개설	
기초	국어	심화 국어	진로선택	선택3	1	5				5			5	개설	
기초	국어	고전 읽기	진로선택	선택3	1	5				5			5	개설	
기초	국어	화법과 작문	일반선택	선택4	1	5					5		5	개설	
기초	국어	언어와 매체	일반선택	선택4	1	5					5		5	개설	
기초	국어	실용 국어	진로선택	선택4	1	5					5		5	개설	
기초	국어	심화 국어	진로선택	선택4	1	5					5		5	개설	
기초	국어	고전 읽기	진로선택	선택4	1	5					5		5	개설	
기초	수학	미적분	일반선택	선택5	1	5				5			5	개설	
기초	수학	확률과 통계	일반선택	선택5	1	5				5			5	개설	
기초	수학	실용 수학	진로선택	선택5	1	5				5			5	개설	
기초	수학	기하	진로선택	선택5	1	5				5			5	개설	
기초	수학	경제 수학	진로선택	선택5	1	5				5			5	개설	
기초	수학	미적분	일반선택	선택6	1	5					5		5	개설	
기초	수학	확률과 통계	일반선택	선택6	1	5					5		5	개설	
기초	수학	실용 수학	진로선택	선택6	1	5					5		5	개설	
기초	수학	기하	진로선택	선택6	1	5					5		5	개설	
기초	수학	경제 수학	진로선택	선택6	1	5					5		5	개설	
기초	영어	영어 회화	일반선택	선택7	1	5				5			5	개설	
기초	영어	영어 독해와 작문	일반선택	선택7	1	5				5			5	개설	
기초	영어	실용 영어	진로선택	선택7	1	5				5			5	개설	
기초	영어	영어권 문화	진로선택	선택7	1	5				5			5	개설	
기초	영어	진로 영어	진로선택	선택7	1	5				5			5	개설	
기초	영어	영미 문학 읽기	진로선택	선택7	1	5				5			5	개설	
기초	영어	영어 회화	일반선택	선택8	1	5					5		5	개설	
기초	영어	영어 독해와 작문	일반선택	선택8	1	5					5		5	개설	
기초	영어	실용 영어	진로선택	선택8	1	5					5		5	개설	
기초	영어	영어권 문화	진로선택	선택8	1	5					5		5	개설	
기초	영어	진로 영어	진로선택	선택8	1	5					5		5	개설	
기초	영어	영미 문학 읽기	진로선택	선택8	1	5					5		5	개설	
탐구	사회(역사/도덕 포함)	세계지리	일반선택	선택10	2	5				3	3		6	개설	
탐구	사회(역사/도덕 포함)	세계사	일반선택	선택10	2	5				3	3		6	개설	
탐구	사회(역사/도덕 포함)	정치와 법	일반선택	선택10	2	5				3	3		6	개설	
탐구	사회(역사/도덕 포함)	윤리와 사상	일반선택	선택10	2	5				3	3		6	개설	
탐구	과학	물리학 II	진로선택	선택10	2	5				3	3		6	개설	
탐구	과학	화학 II	진로선택	선택10	2	5				3	3		6	개설	
탐구	과학	생명과학 II	진로선택	선택10	2	5				3	3		6	개설	
탐구	과학	지구과학 II	진로선택	선택10	2	5				3	3		6	개설	
탐구	사회(역사/도덕 포함)	여행지리	진로선택	선택11	1	5				3	3		6	개설	
탐구	사회(역사/도덕 포함)	사회문제 탐구	진로선택	선택11	1	5				3	3		6	개설	
탐구	사회(역사/도덕 포함)	고전과 윤리	진로선택	선택11	1	5				3	3		6	개설	
탐구	과학	과학사	진로선택	선택11	1	5				3	3		6	개설	
탐구	과학	생활과 과학	진로선택	선택11	1	5				3	3		6	개설	
생활·교양	교양	환경	일반선택	선택14	1	5				2	2		4	개설	
생활·교양	교양	논술	일반선택	선택14	1	5				2	2		4	개설	
학기별 교과 이수단위						180	30	30	29	29	30	30	178		
순중 단위(공동 교육과정, 소수 선택 과목)							0	0	0	0	0	0	0	0	
학기별 창의적체험활동 이수시간						408(24)	68	68	68	68	68	68	408		

2. 2022학년도 입학생(1학년) 교육과정 편제표

학교번호			9				학교명						전일고등학교		
교과영역	교과(군)	과목	과목유형	이수구분	선택과목수	기준단위	1학년		2학년		3학년		운영단위		
							1학기	2학기	1학기	2학기	1학기	2학기			
기초	국어	국어	공통	지정	1	8	4	4					8		
기초	국어	독서	일반선택	지정	1	5					3	3	6		
기초	국어	문학	일반선택	지정	1	5			5				5		
기초	수학	수학	공통	지정	1	8	4	4					8		
기초	수학	수학 I	일반선택	지정	1	5				4			4		
기초	수학	수학 II	일반선택	지정	1	5				4			4		
기초	영어	영어	공통	지정	1	8	4	4					8		
기초	영어	영어 I	일반선택	지정	1	5			5				5		
기초	영어	영어 II	일반선택	지정	1	5				5			5		
기초	한국사	한국사	공통	지정	1	6	3	3					6		
탐구	사회(역사/도덕 포함)	통합사회	공통	지정	1	8	3	3					6		
탐구	과학	통합과학	공통	지정	1	8	3	3					6		
탐구	과학	과학탐구실험	공통	지정	1	2	1	1					2		
체육·예술	체육	체육	일반선택	지정	1	5	2	2					4		
체육·예술	체육	운동과 건강	일반선택	지정	1	5			2	2	1	1	6		
체육·예술	예술	음악	일반선택	지정	1	5	2	2					4		
체육·예술	예술	음악 연주	진로선택	지정	1	5			1	1			2		
체육·예술	예술	미술 창작	진로선택	지정	1	5	1	1					2		
체육·예술	예술	미술 감상과 비평	진로선택	지정	1	5					1	1	2		
생활·교양	한문	한문 I	일반선택	지정	1	5					2	2	4		
기초	국어	화법과 작문	일반선택	선택1	1	5				5			5		
기초	국어	언어와 매체	일반선택	선택1	1	5				5			5		
기초	국어	심화 국어	진로선택	선택2	1	5					2	2	4		
기초	국어	고전 읽기	진로선택	선택2	1	5					2	2	4		
기초	수학	미적분	일반선택	선택3	2	5					3	3	6		
기초	수학	확률과 통계	일반선택	선택3	2	5					3	3	6		
기초	수학	실용 수학	진로선택	선택3	2	5					3	3	6		
기초	수학	기하	진로선택	선택3	2	5					3	3	6		
기초	수학	경제 수학	진로선택	선택3	2	5					3	3	6		
기초	영어	영어 회화	일반선택	선택4	1	5					5		5		
기초	영어	영어 독해와 작문	일반선택	선택4	1	5					5		5		
기초	영어	실용 영어	진로선택	선택4	1	5					5		5		
기초	영어	영어권 문화	진로선택	선택4	1	5					5		5		
기초	영어	진로 영어	진로선택	선택4	1	5					5		5		
기초	영어	영미 문학 읽기	진로선택	선택4	1	5					5		5		
기초	영어	영어 회화	일반선택	선택5	1	5						5	5		
기초	영어	영어 독해와 작문	일반선택	선택5	1	5						5	5		
기초	영어	실용 영어	진로선택	선택5	1	5						5	5		
기초	영어	영어권 문화	진로선택	선택5	1	5						5	5		
기초	영어	진로 영어	진로선택	선택5	1	5						5	5		
기초	영어	영미 문학 읽기	진로선택	선택5	1	5						5	5		
탐구	사회(역사/도덕 포함)	한국지리	일반선택	선택6	3	5			3	3			6		
탐구	사회(역사/도덕 포함)	동아시아사	일반선택	선택6	3	5			3	3			6		
탐구	사회(역사/도덕 포함)	사회문화	일반선택	선택6	3	5			3	3			6		
탐구	사회(역사/도덕 포함)	생활과 윤리	일반선택	선택6	3	5			3	3			6		
탐구	과학	물리학 I	일반선택	선택6	3	5			3	3			6		
탐구	과학	화학 I	일반선택	선택6	3	5			3	3			6		
탐구	과학	생명과학 I	일반선택	선택6	3	5			3	3			6		
탐구	과학	지구과학 I	일반선택	선택6	3	5			3	3			6		
탐구	사회(역사/도덕 포함)	세계지리	일반선택	선택7	2	5					3	3	6		
탐구	사회(역사/도덕 포함)	세계사	일반선택	선택7	2	5					3	3	6		
탐구	사회(역사/도덕 포함)	정치와 법	일반선택	선택7	2	5					3	3	6		
탐구	사회(역사/도덕 포함)	윤리와 사상	일반선택	선택7	2	5					3	3	6		
탐구	과학	물리학 II	진로선택	선택7	2	5					3	3	6		
탐구	과학	화학 II	진로선택	선택7	2	5					3	3	6		
탐구	과학	생명과학 II	진로선택	선택7	2	5					3	3	6		
탐구	과학	지구과학 II	진로선택	선택7	2	5					3	3	6		
탐구	사회(역사/도덕 포함)	여행지리	진로선택	선택8	1	5					3	3	6		
탐구	사회(역사/도덕 포함)	사회문제 탐구	진로선택	선택8	1	5					3	3	6		
탐구	사회(역사/도덕 포함)	고전과 윤리	진로선택	선택8	1	5					3	3	6		
탐구	과학	과학사	진로선택	선택8	1	5					3	3	6		
탐구	과학	생활과 과학	진로선택	선택8	1	5					3	3	6		
생활·교양	기술·가정	기술·가정	일반선택	선택9	1	5	3	3					6		
생활·교양	기술·가정	정보	일반선택	선택9	1	5	3	3					6		
생활·교양	제2외국어	일본어 I	일반선택	선택10	1	5			3	3			6		
생활·교양	제2외국어	중국어 I	일반선택	선택10	1	5			3	3			6		
생활·교양	교양	환경	일반선택	선택11	1	5					2	2	4		
생활·교양	교양	논술	일반선택	선택11	1	5					2	2	4		
학기별 교과 이수단위							180	30	30	29	29	31	31	180	
순중 단위(공통 교육과정, 소수 선택 과목)							0	0	0	0	0	0	0	0	
학기별 창의적체험활동 이수시간							408(24)	68	68	68	68	68	68	408(24)	
학기별 이수과목 수 확인	학기별 이수 과목수(지정 과목)						7	7	3	2	2	2			
	학기별 이수 과목수(선택 과목)						1	1	4	5	7	7			
	학기별 이수 과목수(합계)						11	11	9	9	12	12			
교과 영역 및 교과(군)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과학	체육	예술	생활·교양	기초(최대)
지정 과목 교과(군)별 이수 단위							19	16	18	6	8	10	10	4	
선택 과목 교과(군)별 이수 단위(최대값)							9	12	10	36	36	0	0	16	90
합계							28	28	28	42	44	10	10	20	
특정 교과(군) 및 과목 이수 점점							지정 과목 내 진로 선택 과목 수		한국사 이수 학기		한국사 이수 단위		체육 이수 학기		
							3		2		6		6		

2022학년도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학생 생활 규정



전 일 고 등 학 교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이 규정은 '전일고등학교 학생생활규정'이라 한다.

제2조(목적) 이 규정은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고, 학생들이 공동체 속에서 바람직한 역할과 책임의식을 가지고 민주시민으로서의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적용근거) 이 규정은「교육기본법」제12조 제1항,「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 4(학생의 인권보장), 제20조 제3항(교사의 교육권),「동법시행령」제9조(학교규칙의 기재사항 등), 제31조(학생의 징계 등), 「전북학생인권조례」에 근거한다.

제4조(규정 적용의 원칙) 학생의 인권은 학생이 인간으로서 존엄을 유지하고 행복을 추구하기 위하여 반드시 보장되어야 하는 최소한의 권리이며 이 규정에 열거되지 아니 한 이유로 경시해서는 아니 되고 「헌법」과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전북 학생 인권 조례」에 의거 최대한으로 보장한다.

제5조(학교 구성원의 책무)

- ① 학교장, 교직원, 학생의 보호자 등은 학생의 인권을 존중하고 학생의 인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② 학생은 학교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규범을 준수하고 인권을 학습하며, 교사와 다른 학생의 인권을 존중하고 배려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장 학생생활

제6조(대인 관계에서 자세)

- ① 학교 구성원 모두에게 친절하고 예의를 지키며 진실한 태도로 협조하기 위해 노력한다.
- ② 따돌림, 폭력 등 학교 공동체의 평화적 관계를 저해하는 일체의 행위에 가담하지 않는다.
- ③ 교사의 정당한 교육적 권한과 지시를 존중하고 따른다.
- ④ 교사의 조치가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경우 공손한 언행으로 의견을 개진하고 개선을 요구한다.
- ⑤ 학교 구성원 간의 갈등이나 문제는 대화로 해결한다.
- ⑥ 욕설, 비난 등 모욕적인 언행을 삼가고 바르고 고운 말을 사용한다.
- ⑦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의 차별행위의 정의에 해당하는 이유로 차별받지 아니하며, 타인을 존중하고, 권리와 명예를 손상시키지 않아야 한다.
- ⑧ 다른 학생과 교제 시 제삼자에게 불쾌감이나 수치심을 주는 행동을 하지 않는다.
- ⑨ 성(性)에 관한 올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책임 있는 행동을 한다.
- ⑩ 서로 인사하고 배려하며 행복하고 즐거운 학교 문화를 만들기 위해 노력한다.

제7조(시설이용 및 환경)

- ① 자신이 배출한 쓰레기는 스스로 분리수거하는 등 청결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
- ② 학교의 시설 및 물품, 기자재를 소중히 여기고 훼손하지 않는다.
- ③ 특별교실과 체육관(강당)의 사용은 교사의 허가를 얻어야 하며, 사용규칙을 잘 준수한다.
- ④ 방과 후, 휴일 등에 있어 학교 시설 이용은 교사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 ⑤ 학교 구성원의 건강과 안전을 위태롭게 할 수 있는 사안을 인지할 경우 교사에게 그 사실을 알린다.
- ⑥ 수돗물, 전기 등을 낭비하지 않고 에너지 절약을 생활화한다.

제8조(타인의 소유물에 대한 존중)

- ① 다른 학생 및 교직원의 소유물을 소중히 여기고, 허락 없이는 사용하지 않는다.
- ② 타인의 소유물을 훼손(절도행위 포함)했을 경우 해당 학생, 또는 보호자가 책임을 진다.

제9조(폭력 등에 관한 대처)

- ① 교내에서 폭력이나 괴롭힘, 집단따돌림 등이 발생할 징후를 인지할 경우나 관련 사안이 발생하였을 때는 반드시 그 사실을 교사에게 알려야 한다.
- ② 스토킹이나 성희롱, 성폭력에 대해서는 거부 의사를 표현하고 교사에게 도움을 요청한다.

제10조(학급 및 수업에서 태도)

- ① 수업 등 교육활동의 시종시간을 준수한다.
- ② 수업 내용과 무관한 말과 행동, 소음 등으로 교사의 원활한 수업진행이나 다른 학생의 학습을 방해하지 않는다.
- ③ 교사의 허락 없이 본시 교과 이외의 과목을 공부하지 않는다.
- ④ 교사의 허락 없이 수업 중 교실 안팎에서 돌아다니지 않는다.
- ⑤ 쾌적한 수업 및 학급생활을 위해 청결, 정리정돈 등에 관한 맡은 바 책임을 성실히 수행한다.
- ⑥ 수업에 필요한 교재, 준비물을 지참하고, 제시된 과제는 성실히 수행한다.
- ⑦ 수업시간에 졸지 않고 능동적으로 참여하되, 불가피하게 수면이 필요할 경우 교사의 허락을 받는다.
- ⑧ 학급의 시설 및 물품, 기자재를 소중히 여기고, 다른 학생의 소유물을 허락 없이 사용하지 않는다.
- ⑨ 수업 중 껌을 씹거나 음식물을 섭취하지 않는다.
- ⑩ 수업 중 휴대폰을 꺼내놓거나 사용하지 않는다.

제11조(휴식시간)

- ① 휴식시간(식사시간 포함)에는 자신의 취미와 적성을 살린 활동을 한다.
- ② 휴식시간(식사시간 포함)에는 타인의 휴식을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
- ③ 화장실 사용 시 질서와 위생 규칙을 지켜 청결을 최대한 유지한다.
- ④ 교사의 허가 없이 학교 밖을 출입하지 않는다.
- ⑤ 급식실에서는 청결을 유지하고 질서를 잘 지킨다.
- ⑥ 일과 중 휴식시간에 교정에서는 자전거, 오토바이, 각종 스케이트 및 보드를 타지 않는다.
- ⑦ 휴식시간 중 체육활동은 운동장과 체육관에서만 허용된다.
- ⑧ 타인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심한 장난이나 체육활동을 하지 않는다.
- ⑨ 화투, 카드놀이 등 사행성 오락을 하지 않는다.

제12조(소지 및 사용이 불가한 물품) 학생 개인 및 학교, 학교구성원 모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물품은 소지하거나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일부 물품의 경우 특별한 교육활동을 위해 학교장이 허가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 ① 성냥, 라이터, 폭죽, 드라이기, 고대기 등의 인화물질 및 전열기
- ② 칼, 쇠파이프, 공구류, 고무총, 각목 등 타인을 타격해 위해할 가능성이 현저한 물품들
- ③ 레이저 포인터 등 레이저 기구
- ④ 모든 형태의 도박에 관한 물품
- ⑤ 불법적으로 입수했거나, 인권침해 및 폭력적인 행위를 지지하는 의미를 담은 물품
- ⑥ 성적 수치심을 유발시키거나 저속하고 음란한 내용을 담은 각종 자료 및 물품
- ⑦ 담배, 주류, 부탄가스, 본드, 마약, 향정신성 약물 일체
- ⑧ 면허증이 없거나 보호자의 동의 없이 사용하는 차량 및 오토바이

제13조(용모와 복장)

- ① 복장, 두발의 길이, 모양, 색상 등 용모에 관한 사항은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절차를 거쳐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규정개정심의위원회에서 정한다. 단, 두발의 경우 특별한 경우에 한하여 검은색 계통의 염색을 허용한다.
- ② 청결을 유지하여 타인에게 불쾌감을 유발시키지 않도록 한다.
- ③ 타인을 비하조롱하거나 인권을 침해할만한 문구, 상징 등이 포함된 복장과 장식물을 착용하지 않는다.
- ④ 실내화와 실외화는 구분하여 착용한다.
- ⑤ 교내에서는 교복을 착용하며, 체육활동이나 기타 시간에는 예외로 한다.

제14조(정보통신 윤리)

- ① 사이버 공간에서 타인의 인권과 정보, 사생활을 존중보호하고, 건전한 정보를 제공하고 활용한다.
- ② 음란·폭력성 유해 사이트 접속 및 불법 유해 매체물을 반입하거나 유통하지 않는다.
- ③ 학교에서 영리를 취할 목적이나 상거래를 위해 인터넷을 사용하지 않는다.
- ④ 타인의 지적 재산권을 보호하고 존중한다.

제15조(전자기기 사용)

- ① 교육활동 과정(조종례 시간, 수업, 청소활동, 학교행사, 체험활동)에서 휴대폰 등 전자기기는 작동시키거나 사용하지 않는다. 다만, 교육적 목적 달성을 위해 교사가 허가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전자기기를 작동시키거나 사용한 학생에 대해 전자기기 제출을 교사가 요구할 경우 학생은 그 요구에 응한다.
- ③ 휴대폰을 사용할 때에는 타인에게 방해가 되지 않도록 통화예절을 지킨다.
- ④ 시험기간 중 휴대폰은 등교 시 담임교사에게 제출하여 보관하며, 시험 중 휴대폰을 소지하거나 사용할 경우 부정행위로 간주된다.
- ⑤ 교내의 모든 정보화기기는 교육활동을 위해서만 활용한다.

제16조(자치활동)

- ① 학생의 자치능력을 배양하고 더불어 사는 삶을 배워 민주시민의 자질을 기르기 위한 학급회, 학생회, 동아리 등의 학생자치활동은 보장된다.
- ② 학생자치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학생들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주체가 된다.
- ③ 학생대표는 학생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관하여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여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④ 동아리는 소정의 절차를 거쳐 학교장의 허가를 얻어 조직할 수 있다.
- ⑤ 학생자치활동은 적극적으로 보장되며 적절한 예산을 지원 받는다.
- ⑥ 자치활동의 조직 및 기능에 관련한 사항은 '학생회 회칙'에 따른다.

제17조(기타)

- ① 교내외에서 실시하는 각종 체험활동 및 단체 활동에 참여할 때에는 지도교사의 지시에 따라 질서를 유지하고 안전에 유의한다.
- ② 청소년에게 판매가 금지되었거나 불법적이고 유해한 술, 담배, 본드 등 약물을 소지하거나 섭취하지 않는다.
- ③ 유해 업소 등 청소년 출입제한 구역에 출입하지 않는다.
- ④ 행복하고 쾌적한 공동체 문화 조성을 위해 기초질서 및 공중도덕을 준수한다.

제3장 생활교육위원회

제18조(학교 생활교육위원회)

- ① 학생의 생활교육 전반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학교생활교육위원회(이하 '학교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 학교위원회는 교감, 생활교육 담당부장, 생활교육 담당교사, 교무부장, 각 학년부장으로 하며, 특정한 학생에 대한 생활교육 협의 시에는 그 학생의 소속 학급 담임교사를 참석하도록 한다.
- ③ 학교위원회는 교감이 위원장이 되어 운영을 총괄하며, 생활교육 담당교사는 간사가 되어 사무를 주관한다.

제19조(생활교육위원회의 소집 및 기능)

- ① 학교위원회는 징계 사안이 발생하였을 때 생활교육 담당부장의 제청으로 교감이 소집하여 이를 심의·의결한다.
- ② 학교 생활교육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사항은 학교장의 결재를 거쳐 시행한다.

제20조(의결 정족수) 위원회는 재적위원 2/3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1조(체벌금지) 학생들에게 신체적 고통을 가하거나 정신적 모욕감과 수치심을 주는 언어폭력 등을 포함한 일체의 행위는 금지된다. 특히 금지해야할 체벌의 유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① 도구에 의한 체벌
- ② 손이나 발 등 신체에 의한 체벌
- ③ 반복적, 지속적 신체 고통을 유발하는 기합 형태의 체벌
- ④ 학생끼리 체벌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 ⑤ 학생들에게 모욕감이나 수치심 등을 유발시키는 언어적 폭력

제22조(교사의 권한) 생활교육에 있어 학생의 인권을 존중하고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교사의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① 교육적 상담 및 조언
- ② 교육환경 조성
- ③ 시정 요구
- ④ 훈계, 훈육 등의 교육적 조치
- ⑤ 학교생활교육위원회 소집 요구 및 의견 제출
- ⑥ 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 분쟁조정 신청
- ⑦ 교권보호위원회 구제 신청

제23조(훈계, 훈육 등의 교육적 조치)

- ① 교사는 학생과의 상담을 통해 문제행동의 원인을 우선 파악한다.
- ② 교사는 학생의 행동 성찰 및 수정을 유도하기 위해 다음 각 호와 같은 훈계, 훈육의 교육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자리에서 일으켜 세우기
 2. 교실 내 특정 공간으로 이동시키기
 3. 적절한 수준의 학습 과제 부여
 4. 적절한 수준의 방과 후 지도
 5. 훼손 시설, 물품, 오염 등에 관한 원상복구, 청소 명령
 6. 학부모 통보 및 상담

7. 기타 학교생활교육위원회에서 마련한 인권우호적인 교육적 조치
- ③ 교사가 상담 및 교육적 조치를 반복해도 학생이 행동 수정의 의지가 없다고 판단되면 학교생활교육위원회에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

제24조(소지품 검사)

- ① 학생과 교직원의 생명과 신체에 직접적 위협을 발생시키고, 학교의 안전을 위협하는 물건을 학생이 소지하여 사용 가능성이 현저할 경우 해당 학생의 소지품을 검사할 수 있다.
- ② 소지품 검사는 다수의 학생을 대상으로 일괄적이고 주기적으로 실시해서는 안 된다.
- ③ 소지품 검사 시에는 학생의 동의를 얻고, 모욕감과 수치심을 느끼지 않도록 가능한 한 간결하고 신속하게 실시한다.
- ④ 신체 내 휴대가 의심되는 소지품에 대한 검사는 여학생은 여교사, 남학생은 남교사가 실시한다.
- ⑤ 사안 발생시 학교장에게 보고 후 협의를 통해 대처하되, 상황이 급박한 경우 선 대처 후, 학교장에게 보고하여 처리한다.
- ⑥ 소지품 검사는 공개적으로 실시해서는 안 된다.
- ⑦ 소지품 검사가 가능한 상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2조 제1호에서 예시한 도구를 소지하고, 타인을 상해하거나 화재를 발생시킬 수 있다는 제보를 접수한 경우
 2. 제12조 제2호에서 예시한 도구를 소지하고, 타인을 상해할 수 있다는 제보를 접수한 경우
 3. 제12조 제7호에서 예시한 도구를 소지하고, 본인, 또는 타인과 흡입 및 섭취할 수 있다는 제보를 접수한 경우

제26조(징계의 원칙)

- ① 학생의 징계는 징계사유에 대한 사전 통지, 공정한 심의기구의 구성, 소명의 기회 보장, 대리인 선임권 보장, 재심요청권의 보장 등 적법절차를 준수한다.
- ② 징계와 그 전후의 절차에서 징계대상 학생의 회복과 복귀를 목표로 하고, 그것을 위하여 지역사회, 보호자 등과 협력한다.
- ③ 학교의 장은 징계를 할 때에는 학생의 인격이 존중되는 교육적인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그 사유의 경중에 따라 징계를 단계별로 적용하여 학생에게 개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 ④ 학교의 장은 징계를 할 때에는 학생의 보호자와 학생의 지도에 관하여 상담할 수 있다.
- ⑤ 징계 대상 학생의 신상정보를 노출시켜서는 아니 된다.

제27조(징계의 종류와 기간) 징계의 종류와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① 학교내 봉사 : 5시간 이내의 기간으로 하고, 출석으로 처리한다.
- ② 사회봉사 : 3일 이내의 기간으로 하고, 출석으로 처리한다.
- ③ 특별교육이수 : 3일 이내의 기간으로 하고, 출석으로 처리한다.
- ④ 출석정지 : 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의 기간으로 하고, 미인정결석으로 처리한다.
- ⑤ 퇴학처분 : 본교에서 퇴학시키는 것을 말한다.
- ⑥ 훈계·훈육, 교실에서 분리조치, 상담지도, 특별과제 부여 등은 징계에 속하지 아니하고, 학생 지도의 한 방법으로 한다.

제28조(징계의 방법)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항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징계를 할 수 있다.

- ① 학교내 봉사 : 해당 학생은 등교할 수 있으나 일정한 제약을 받을 수 있으며 생활교육 담당 부서나 해당 학년 교사 등의 지도를 받으며 봉사활동(교내 환경 미화, 교재·교구정비, 또는 교원들의 업무보조, 학교 인성교육프로그램, 기타 적절한 활동 등)을 하여야 한다. 단 해당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방과후에 실시한다.

- ② 사회봉사 : 해당 학생은 지역 행정기관, 공공기관, 사회복지기관 등에서 일정한 시간동안 사회봉사활동을 하여야 한다. 사회봉사기관으로부터 대상 학생의 불참 및 이탈 통보가 있을 경우 사고결석으로 처리하여 가중 처벌한다.
- ③ 특별교육이수 : 해당 학생은 전라북도 교육감이 설치·지정·위탁한 교육기관에서 교육 및 상담치료를 받아야 한다. 교육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사고결석으로 처리하여 가중 처벌한다.
- ④ 출석정지 : 해당 학생은 가정학습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부모님의 보호·감독이 어려울 경우 학교 상담실에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출석정지 기간은 무단결석으로 처리하되, 학교생활기록부의 특기 사항란에 사유는 기재하지 않는다.
- ⑤ 퇴학처분 : 징계의 최종 단계로 퇴학처분을 시킬 수 있다. 학교장은 퇴학처분을 할 때에는 1주~2주의 기간 동안 '가정학습'을 하게 할 수 있으며, 해당 학생 및 보호자와 진로상담을 실시하여야 하고,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다른 학교 또는 직업교육훈련기관 등을 알선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제29조(징계통보 및 진술권 보장)

- ① 학교 생활교육위원회는 징계 사안 심의 전에 간사의 사안 설명 및 해당 학생의 학교생활·품성·가정환경 등에 대한 의견을 담임교사(또는 상담교사)로부터 청취한다.
- ② 위원회는 학생 또는 보호자의 의견 진술을 듣는다.
- ③ 위원회는 학생 또는 보호자에게 '위원회 개최', '의견진술(소명) 기회 보장', '대리인 선임권 보장'에 관한 사항을 유선 또는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유선 통화일시, 내용의 기록 또는 서면 통보 사본을 보관한다)

제30조(심의 확정 및 재심 요구)

- ① 학교장은 위원회의 해당 학생에 대한 징계 의결 내용과 학생 또는 보호자의 진술내용을 검토하여 교육적인 차원에서 징계를 최종 결정한다.
- ② 위원회에서 징계가 결정되면 이를 해당 학생과 보호자에게 즉시 통보하고, 보호자에게 학생 선도에 협조할 것을 요청한다.
- ③ 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학생, 또는 보호자는 3일 이내(등교일 기준)에 재심을 요구할 수 있다.
- ④ 학교장은 재심 요구일로부터 5일 이내에 재심 여부를 결정하여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⑤ 학교장은 위원회가 심의·의결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회에 재심을 요구하거나 전체 교무회의에 회부하여 심의·확정할 수 있다.

제31조(퇴학처분에 대한 징계 재심 청구)

- ① 학교위원회의 징계 처분 중 퇴학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학생 또는 보호자는 그 조치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그 조치가 있음을 안 날부터 10일 이내에 '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 그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 ② 학생 또는 보호자가 학생 징계조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청구인의 이름, 주소 및 연락처
 2. 피청구인
 3. 퇴학조치가 있음을 안 날
 4. 청구의 취지 및 이유
- ③ 징계조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때에는 청구사항을 지정 서식에 작성하여 관련 자료와 함께 담당 부서를 방문하여 접수한다.

제32조(징계의 유보, 경감, 해제, 가중 등)

- ① 징계 중의 학생이라도 각종 시험에 응시하게 하되, 시험 참여기간은 징계기간에서 제외한다.
- ② 학교장은 징계 완료 전이라도 개전의 정이 뚜렷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처벌의 경감 및 그 기간

을 단축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

- ③ 징계 중에 있는 학생이 징계사안이 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가중 처벌할 수 있다.

제33조(사후 조치)

- ① 담임교사와 상담교사는 징계가 종료된 학생을 수시로 관찰·지도하고, 지도 내용 및 결과를 기록 보존한다.
- ② 퇴학 처분을 받은 자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과 동령 제89조(고등학교의 전학 등)에 의거하여 전학 또는 재입학이나 편입학 할 수 있다.

제34조(징계의 기준)

학교생활규정 재·개정 방향이 제시한 관련 근거 법령에 위반되지 않도록 유의하여 학교에서 전북 학생인권 조례 19조 2항의 절차를 거쳐 규정개정심의위원회에서 정한다.

제5장 규정의 개정

제35조(규정개정심의위원회 구성)

- ① 본교의 학교생활규정을 제정하거나 개정하기 위하여 「규정 개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둔다.
-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8인 이상 12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회는 위원장, 간사(생활지도 업무 담당자),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으로 선출한다. 학생위원은 전체의 1/3이상이 되도록 구성해야 한다.
- ③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 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⑤ 위원회는 회의 안전과 관련된 의견수렴, 문헌조사를 실시하며, 학교관계자, 학부모 대표, 학생 대표 및 기타 위원회의 의결로써 결정된 자를 출석하게 할 수 있다.

제36조(개정안의 발의)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학교생활규정에 대한 개정을 발의할 수 있다.
 1. 위원회 재적 위원의 과반수
 2. 재직 교원의 과반수
 3. 학부모 대표(학부모회 의결서 첨부)
 4. 학생회 대표(학생회의 의결서 첨부)
 5. 관련 법령, 지침 등의 개정으로 인한 학교장 발의
- ② 단, 제1항에 따른 발의 시기는 학생의 학습활동 등을 고려하여 학년 초로 하되, 관련 법령, 지침 등의 개정으로 인하여 개정의 필요가 있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37조(문헌조사 및 의견수렴)

- ① 위원회에서는 개정안에 대한 적법성, 타당성 등을 검토하고 의견수렴을 위하여 설문조사, 토론회, 공청회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 ② 제1항에 의한 문헌조사 및 의견수렴의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은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38조(심의 및 결정)

- ① 위원회는 개정안을 확정하여 학교운영위원회에 심의 또는 자문을 요청한다.
- ②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 및 학교장의 결정 절차는 학교운영위원회의 규정을 따른다.

제39조(연수 및 교육) 개정된 학교생활규정에 대해서 학생 및 교직원을 대상으로 연수 및 교육을 실시 하고, 학부모에게 가정통신문으로 개정 사실을 안내한다.

부 칙

제1조 이 규정은 2019년 5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또는 해석 상 논란이 발생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학교생활교육위원회 협의의 결정을 거쳐 결정한다.

별첨1.

【생활지도 기준안】

구분	항	행 위 내 용	징계의 기준					
			주의	교내 봉사	사회 봉사	특별 교육	출석 정지	퇴학
예절	1	교사에게 폭언을 하거나 폭력을 가한 학생		○	○	○	○	○
	2	언행과 태도가 불량하여 교사 및 주민으로부터 학교에 진정 또는 통보된 학생	○	○	○			
준법	3	학교시설 파손과 공중도덕을 위반한 학생		○	○	○		
	4	공공문서를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나쁜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대여한 학생			○	○	○	
	5	교사의 지도에 불응한 학생	○	○	○			
	6	인장 및 제 증명을 위조한 학생		○	○	○		
	7	형법상 유죄로 판결된 학생				○	○	
수업	8	수업 준비 또는 태도가 불량한 학생	○					
	9	상습적으로 타인의 학습 및 교사의 수업을 방해한 학생	○	○	○			
	10	고사 중 부정행위를 했거나 동조한 학생		○	○			
	11	시험 문제를 누설 또는 문제지를 절취한 학생			○	○	○	○
약물	12	흡연 또는 음주를 한 학생 및 담배, 술, 라이터, 성냥을 소지한 학생(흡연자, 음주자로 간주)	○	○	○	○		
	13	본드, 대마초, 환각제나 마약류를 복용한 학생			○	○		
금품	14	타인의 소유물을 훼손 또는 훔친 학생		○	○	○		
도박	15	상습적으로 도박 및 사행성 게임을 한 학생		○	○	○		
기타		동일 학년에 3회 이상 동일 징계를 받았을 때는 가중 처벌한다.						
		생활지도 기준안에 명시된 경우라 할지라도 사안에 따라 학생생활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징계를 가감할 수 있다.						

별첨2.

흡연 예방에 관한 규정

※ 학교생활규정 제12조 7항, 생활지도기준안 12항의 위반으로 주의, 교내봉사 및 사회봉사, 특별교육 이수 of 선도 처분을 적용한다.

- 1회 적발 시 주의처분
- 2회 적발 시 교내봉사활동 3시간 이수
(부모에게 흡연 사실 공지 후 학교 소환조치)
- 3회 적발 시 사회봉사활동 5시간 이수
- 4회 적발 시 금연학교 입교 및 특별교육 이수

2022학년도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체험학습 운영 규정



전 일 고 등 학 교

전일고등학교 체험학습 운영 세부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전일고등학교 학교 규칙」제4장 제16조에 규정된 체험학습(개인교환학습, 단체교환학습, 교외체험학습)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출석인정 일수)

1. 본교 개인교환학습 인정기간은 (1개월 이내(4주)), 단체교환학습은 (2주 이내)로 한다.
2. 교외체험학습 출석인정 일수는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을 제외한 연 (30일 이내) 로 하며, 연속 신청 가능 일수는 연 (10일 이내) 로 한다.
3. 관찰, 조사, 수집, 현장 견학, 답사, 문화체험 등의 일반 교외체험학습은 연 (15일 이내) 로 사용 가능하며,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경계' 단계 시 교외체험학습 승인사유에 '가정학습'을 포함하여 연 (30일 이내) 로 사용할 수 있다.
4. 교외체험학습 기간은 1일 단위 운영이 원칙이나, 필요시 반일(4시간)도 사용할 수 있다. (4시간 2회 시 1일로 환산)

제3조(운영절차)

1. 학생이 다양한 체험활동을 하고자 할 때 반드시 보호자의 책임 하에 실시한다.
2. 교환학습(개인,단체)은 학부모의 교환학습 신청→ 관련 학교장 상호 협의→협의사항 학부모에 통보→ 교환학습 실시→위탁학교 생활기록을 재적학교에 통보→교환학습 보고서 제출의 절차로 운영한다.
3. 교외체험학습은 학생·보호자가 교외체험학습 실시 3일 전(감염병 위기경보 '심각,경계'단계의 경우 전일)까지 신청서를 담임교사에게 제출하여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은 후 실시하며, 체험학습 종료 후 신청서의 체험 내용을 바탕으로 학생이 직접 보고서를 작성하여 7일 이내에 제출한다. 단, 신청서 및 보고서 제출기한 및 방법은 다음과 같은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예외 인정 가능하다.
 - ① 지역 내 갑작스러운 감염병 확산으로 인해 당일 신청이 불가피한 경우
 - ② 기타 학교장이 인정하는 불가피한 사유
4. 학교는 제출된 보고서를 토대로 면담 등을 통한 사실 확인 후 출석으로 처리하며 신청서 및 보고서, 기타 증빙서류는 취합하여 5년간 보관한다.

제4조(교외체험학습 형태) 가족동반여행, 친인척 방문, 답사·현장견학활동, 문화체험활동 등이 있으며, 위기경보 '심각, 경계' 단계에 한하여 가정학습을 포함한다.

제5조(체험학습 불허 사항)

- ① 도교육청 체험학습 승인 불가 사항
- ② 정기고사 실시 기간 및 성적확인(이의신청) 기간

- ③ 학기 및 학년 학사일정 시작 후 3일 및 종료 전 3일 기간
- ④ 기타 학교에서 비교육적으로 판단되는 학교 밖 활동
- ⑤ 기타 학교장이 인정하지 아니하는 활동

제6조(미인정 결석 처리) 다음의 경우 미인정 결석으로 처리한다.

- ①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에 의거 미인정 결석으로 처리되는 사항
- ② 사전 허가된 기간을 초과하여 체험학습을 실시했을 경우
- ③ 사전 신청내용과 다르게 허위로 체험학습을 추진하는 경우

제7조(규정되지 않은 기타 항목) ‘전일고등학교 학교 규칙’과 ‘전일고등학교 체험학습 운영 세부 규정’에 규정되지 않는 기타 항목의 경우, [붙임1] ‘전라북도교육청 2021학년도 체험학습 운영 계획’을 준하여 실시한다.

제8조(시행) 본 규정은 2021학년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교외체험학습

1. 교외체험학습 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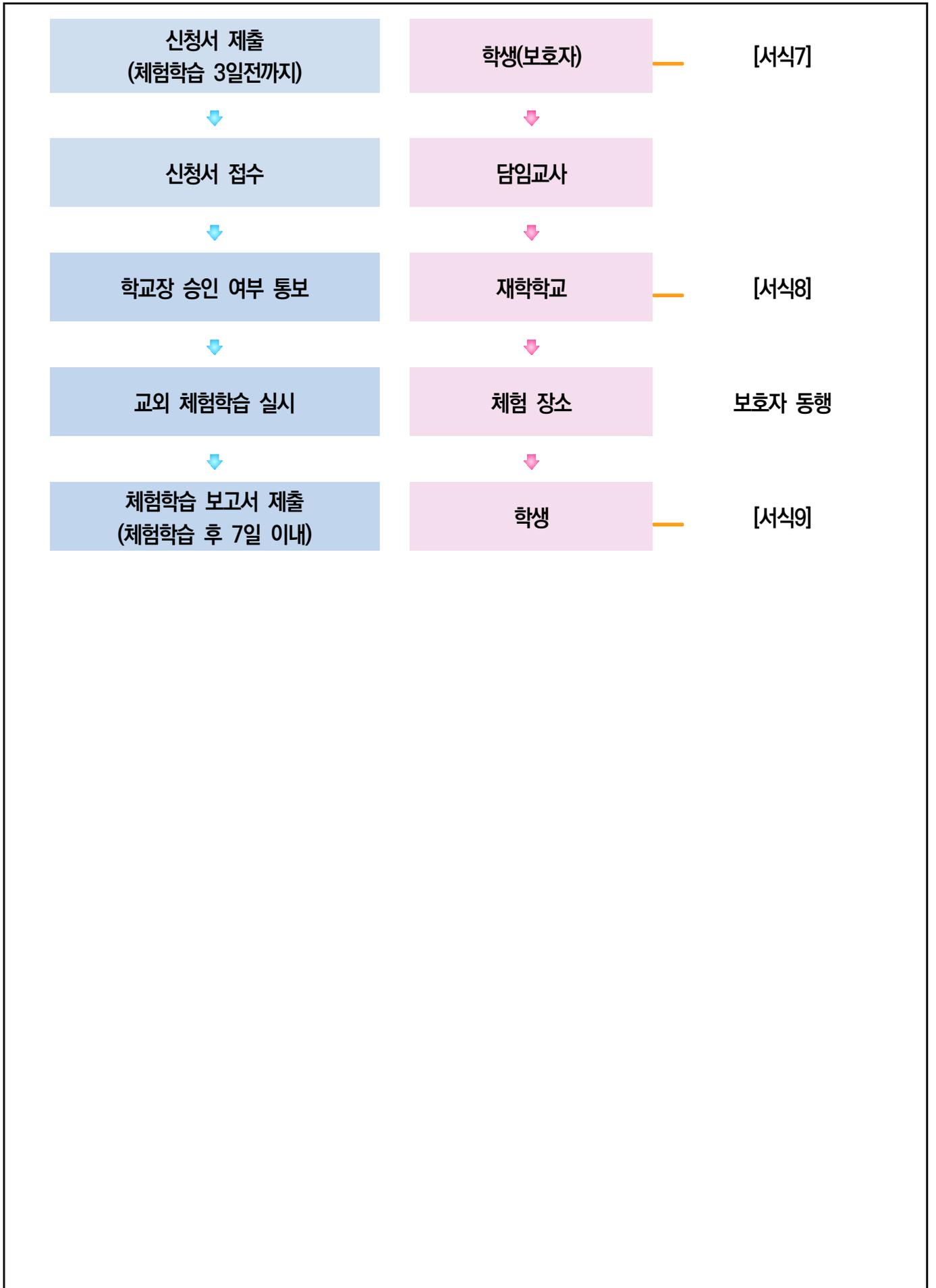
- 가. 교외체험학습은 개인 계획에 의하여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은 후 실시하는 체험학습으로, 그 기간은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을 제외한 연 30일 이내에서 출석으로 인정하는 것을 권장한다.
- 나. 교외체험학습은 관찰, 조사, 수집, 현장 견학, 답사, 문화체험 등의 직접적인 경험 활동, 실천이 중심이 되어 교육적인 효과를 나타내는 폭넓은 체험학습을 의미하며,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 경계' 단계인 경우에 한하여 '가정학습'을 승인사유에 포함한다.
 - 1) 교외체험학습 승인일수 내 일반 교외체험학습 및 가정학습 운영방식 학교 자율 설정
 - 2) 위기경보 '관심, 주의' 단계로 하향시 가정학습 사용 불가
- 다. 교외체험학습 기간은 1일 단위로 운영함이 원칙이며, 필요시 반일(4시간)도 운영이 가능하다. (4시간 2회시 1일로 환산)
- 라. 학생이 다양한 학교 밖 체험활동을 위해 국내외 답사 등 체험활동을 하고자 할 때 반드시 보호자의 책임 하에 실시한다.
 - 단, 해외에 거주하는 친지 방문시에는 부모비동반 UM(Unaccompanied Minor)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음

2. 교외체험학습 신청 절차

- 가. 보호자는 체험학습 실시 3일전(토·일 및 공휴일 제외,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 경계' 단계의 경우 전일)까지 교외체험학습 계획을 수립, [서식 7]교외체험학습 신청서(가정학습의 경우 학습계획서)를 기재하여 담임교사에게 신청서를 제출하고, 학생은 체험학습 종료 후 7일 이내 [서식 9]교외체험학습 보고서를 제출한다.
 - (단, 신청서 및 보고서 제출기간 및 방법은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자체규정에 의해 예외 인정 가능)
- 나. 인솔자는 보호자 또는 보호자의 위임을 받은 성인으로 한다.
- 다. 신청서를 접수한 후 학교장은 교외체험학습의 필요성과 교외체험학습이 충실히 수행될 수 있는지를 판단한 후 교외체험학습을 승인한다.
- 라. 교외체험학습을 떠나기 전 학생과 보호자는 체험학습 시 주의사항, 체험학습 방법 등을 안내 받고 교외체험학습을 실시한다.
- 마. 교외체험학습 신청내용과 다르게 허위로 체험학습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미인정결석으로 처리할 수 있다.

※ 교외체험학습 승인불가 사항(미인정 결석 처리)

- 사설학원, 종교단체 등에서 계획하여 실시하는 모든 활동
- 1명의 성인이 1명의 학생이 아닌 여러 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모든 활동



〈서식 7〉 : 학교 제출용(보호자용)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체험학습 참가자	학년	반	번	성명	전화	비고

기간	2021년 월 일(요일) ~ 2021년 월 일(요일)(일간)					
시간	시 분 ~ 시 분 ※반일신청의 경우에만 작성					
장소						
인솔보호자	기간	학생과의 관계	성명	전화		
체험학습 주제	<예시> · 국내·외 친지 방문 및 효도 체험학습 · 국내·외 역사문화 탐방 및 체험학습 등					
학습내용						
확인사항	· 교외체험학습 기간 동안 안전 사항을 포함한 발생하는 모든 제반 문제에 대해 책임질 것을 확인합니다. · 신청한 내용과 다르게 허위로 현장체험학습을 추진할 경우에는 미인정결석으로 처리됨을 확인합니다. · 교외체험학습 신청서는 체험학습 실시 3일전(감염병 위기경보 ‘심각,경계’ 단계의 경우 1일전), 보고서는 체험학습 완료 후 7일 이내 제출하여야 합니다.					

위와 같이 교외체험학습을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월 일

학생 : (인)
신청인 보호자 : (인)

(전일고등) 학교장 귀하

결재	담임	부장	교감	교장

〈서식 8〉 : 담임교사가 작성하여 보호자에게 통보

교외체험학습 통보서

성명		학년 반	학년 반 번
신청기간	2021년 월 일(요일) ~ 2021년 월 일(요일)(일간)		
허가기간	2021년 월 일(요일) ~ 2021년 월 일(요일)(일간)		
누적사용기간/ 인정기간	일 / 일		
위와 같이 허가 처리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2021년 월 일			
학교 학년 반 담임교사: (인)			
보호자님 귀하			

※ 보호자가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하여 체험학습이 허가된 것이 아니며 담임교사로부터 반드시 최종 허가 여부 통보서(또는 문자)를 받은 후 실시해야 함

2022학년도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출결 · 평가 · 기록 가이드라인



전 일 고 등 학 교

1. 기본원칙

학교에서 실시하는 등교 및 원격수업의 출결·평가·학교생활기록 작성 등의 처리 방법은 '2022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기재요령'에 따르며, 기재요령에 제시되지 않은 제1급 감염병인 코로나19 상황 관련 세부적인 출결 및 평가 처리는 본 안내사항을 준수함.

※ 적용 기간은 2022학년도 1학기 학사운영 시작일부터 별도의 지침이 안내되기 전까지로 한정

2. 출결처리

(등교중지학생) 「학교보건법」 제8조, 「학교보건법시행령」 제22조 및 '유·초·중등 및 특수학교 코로나 19 감염예방 관리 안내'에 따라 출석하지 못한 경우, 출석인정결석 처리

※ 확진자 발생 등에 따른 시설이용 제한 조치로 일과 중 등교중지 되는 경우, 해당일은 '출석인정조퇴'

- 등교중지 학생이 학급단위 이상 원격수업*에 참여 시 출석 처리하고, 대체학습의 이수 여부는 출결처리와 무관(출석인정결석 처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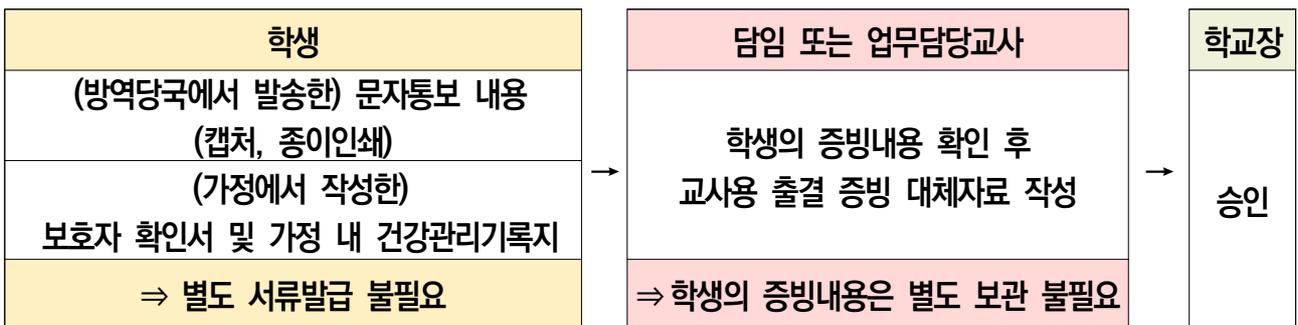
* 밀집도 최소화를 위해 학급을 분반하여 원격수업과 등교수업을 병행하는 경우를 포함함(예: 홀수번호 원격수업, 짝수번호 등교수업). 이는 학생이 속한 해당 학급의 수업을 들을 때만 유효함. 대다수의 학생은 등교수업하고, 일부 등교중지 학생 대상으로 수업 장면을 실시간 원격 송출하는 것은 대체학습 일환으로 간주하여 출석인정결석 처리함

◦ (등교중지학생 출결 증빙서류) 교사의 '출결 증빙 대체자료' 활용 권장

- (목적) 등교중지 대상 학생의 출결 관련 증빙서류 간소화를 통한 학교 현장의 업무 부담(증빙서류 수합 및 확인) 경감 지원

- (방법) 의료기관(선별진료소 포함)의 문자 통보 내역, 보호자 확인서 및 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를 확인한 교사의 '출결 증빙 대체자료(서식1 참조)' 활용

※ 활용 여부는 학교장 재량이며, 서식은 단위학교 실정에 맞게 재구성하여 적용 가능



※ 교사의 출결증빙 대체자료 원본은 첨부물 분리등록 등을 통해 보관토록 함

- (범위) 코로나19 등교중지학생으로 한정하며 이외의 출석인정결석(가정학습, 훈련참가 등), 질병결석, 기타결석 증빙서류는 이전과 동일

[등교중지 대상 학생별 교사의 출결 증빙 대체 자료 작성 시 참고사항]

구분	통보 주체	유형	학생 접종여부	등교중지	출결 증빙자료 (문서, 문자메시지, SNS, 이메일, 사진 등 포함)	
학생 본인	방 역 당 국	PCR 검사자	무관	결과 수령 시까지	• PCR 음성확인서	
		확진자		격리 해제 시까지 (일반적으로 7일)	• 입원·격리 통지서(격리해제확인서도 가능)	
		PCR음성인 밀접접촉자	미완료자	격리 해제 시까지 (일반적으로 7일)	• 격리 통지서(격리해제확인서도 가능)	
			접종 완료자	수동감시(7일) 대상자이므로 등교 다만 수동감시 대상자가 자가격리로 전환된 경우, 격리 해제시까지 등교중지함		
	단 위 학 교	접 촉 자	고위험 기저질환	무관	결과 수령 시까지	• PCR 음성확인서
			그 외		결과 수령 시까지	• [의료기관 검사 시] 신속항원검사 결과 확인서(소견서) • [선별진료소 또는 자체 검사 시] 신속항원검사 결과 보 호자 확인서
					※ 7일간 3회 이상(2일 간격) 실시, 각 검사 결과 음성인 경우 등교 가능	
	-	의심증상자	무관	증상 호전 시까지	• [의료기관 검사 시] 신속항원검사 결과 확인서(소견서) • [선별진료소 또는 자체 검사 시] 신속항원검사 결과 보 호자 확인서 ※ 부득이 검사 미실시한 경우, 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	
	실거주 동거인	방 역 당 국	PCR 검사자	무관	결과 수령 시까지	• 동거인의 PCR 음성확인서
			확진자	미완료자	격리 해제 시까지 (일반적으로 7일)	• 동거인의 입원·격리 통지서 또는 격리해제확인서
접종완료자				수동감시(7일) 대상자이므로 등교 다만 수동감시 대상자가 자가격리로 전환된 경우, 격리 해제시까지 등교중지함		
PCR음성인 밀접접촉자			무관	별도의 격리기간 없으므로 등교		

※ 등교중지 기준은 '유·초·중등 및 특수학교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안내'에 근거하며, 상단의 표는 출결처리를 위한 증빙자료 제시가 목적임

※ 접촉자가 아닌 학생이 선제검사 실시로 인하여 결석하는 경우, 출석인정결석 대상이 아님

※ 밀접접촉자: 방역당국으로부터 밀접접촉자로 통보받은 자, 접촉자: 학교자체조사에서 접촉자로 분류한 자

※ 접종완료자: 3차 접종자 또는 2차 접종 후 14일~90일인자(2차 접종자이면서 코로나19 기 확진된경우 접종완료자 로 간주함)

※ 22.2.9.일부터 입원·격리통지는 문자 등으로도 통보되고, 확진자와 격리자가 같은 가구인 경우 가족 일괄 격리통지 가능,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별도의 격리해제통지 없이 최초 통지된 격리통지서상의 격리해제일 자정(24시)이 도래하면 격리 해제된 것으로 봄(교육부 학생건강정책과-1361, 22.2.17.)

◀ 참고 ▶ 상황별 출결 처리 방법

- ① 단위학교 자체조사에 따른 접촉자(PCR검사 또는 신속항원검사 대상자)
 - 가. 검사 미실시하고 미등교 / 검사 결과 음성이나 미등교하는 경우
: 의사의 진단서(소견서) 또는 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로 증빙하여 출석인정결석, 증빙자료 없을 시 미인정결석
 - 나. 검사 미실시하였으나 등교 희망하는 경우
: 검사 실시를 강력히 권고, 등교중지 강제는 아님. 단, 증상이 있을 경우 '의심증상자'의 등교기준에 따름
- ② 수동감시 대상자가 미등교하는 경우
: 의사의 진단서(소견서) 또는 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로 증빙하여 출석인정결석, 증빙자료 없을 시 미인정결석
- ③ 학생 본인이 확진 후 격리해제 되었고, 최초 확진일로부터 45일 이내에 단위학교 접촉자가 되었거나 의심증상이 있는 경우
: 최초 확진일로부터 45일 이내인 경우, PCR 검사 및 신속항원검사에서 양성(단순 재검출)이 될 수 있으므로 검사를 실시하지 않음. 미등교 시 의사의 진단서(소견서) 또는 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로 증빙하여 출석인정결석, 증빙자료 없을 시 미인정결석

- (고위험군학생) 의사의 진단서(소견서)를 통해 인정된 ①기저질환 및 ②장애를 가진 학생의 경우 ③ 출석인정결석 처리

◀ 고위험군 관련 참고사항 ▶

- ① 폐질환, 만성심혈관질환, 당뇨, 신장질환, 만성간질환, 악성종양, 면역저하자 등
- ② 보건복지부의 '장애복지카드' 소지자에 한하며, 장애복지카드를 증빙서류로 갈음할 수 있음
- ③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 경계" 단계이며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 결석한 경우
 - ※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관심, 주의' 단계이며 학부모(보호자)가 학교에 사전 연락(전화 또는 문자 등)한 경우 질병결석 처리임
 - ※ 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지역여건 등에 따라 의료기관 방문이 어려운 경우 학교장이 허가한 기간 내)에 고위험군(기저질환 및 민감군)임을 확인하는 의사의 진단서(소견서)를 제출해야 하며, 매 학기 초 제출한 진단서(소견서)로 해당학기 증빙을 갈음할 수 있음
 - ※ 등교하지 않는 고위험군 학생에 대한 대체학습 제공 방법 등은 학교장이 결정
- (가정학습 신청 및 해외 체류 학생) 등교수업 운영 기간에 등교하지 않고 원격수업*을 수강한 경우, 원격수업 수강을 근거로 출석 처리 불가
 - * 학교에서 운영 중인 학급단위 이상 원격수업이 있더라도, 해당 학생의 '등교일'에는 원격수업 수강 내역으로 출석처리 불가
- (코로나19 백신 접종) 접종일 및 이상반응 발생 시 접종 후 1~2일은 출석인정결석(증빙서류: 예방접종내역확인서 또는 예방접종증명서), 3일 이상 지속 시 질병결석(증빙서류: 의사의 진단서(소견서), 처방전 등) 처리
 - * 접종 후 1~2일은 휴업일을 포함하여 산정함. 예) 접종일이 금요일인 경우, 접종 후 1일은 토요일을 의미
 - ※ 백신 접종을 예약하였으나, 부득이한 사유로 접종을 하지 못한 경우는 해당 사유를 증빙하여 그에 따라 결석 처리(단순 변심으로 접종하지 못한 경우 미인정결석)

《 코로나19 백신접종에 따른 출결처리 및 증빙자료 》

	접종일	접종 후 1일	접종 후 2일	접종 후 3일~
출결	출석인정에 따른 출결처리(결석·지각·조퇴·결과)			질병으로 인한 출결처리
증빙자료	예방접종내역확인서 또는 예방접종 증명서			의사 진단서(소견서), 처방전 등

- 등교 및 원격수업에 모두 해당되며, 원격수업(학급단위 이상인 경우만 인정)은 학생이 희망하여 기간 내 수강하는 경우 출석 처리 가능

3. 학생평가 기록

(학생평가) 원격 및 등교수업에서 학습한 내용에 대해 학생의 학업성취도를 지필평가, 수행평가 등을

통해 직접 관찰·확인하고 평가의 객관성·공정성·투명성과 신뢰도 제고 ※ 지필평가는 등교하여 실시

- (평가계획 수립 및 안내) 등교중지 등으로 인한 결시생의 인정점 부여 기준(산출식)을 마련하고, 학생·학부모에게 철저한 사전 안내 필요

- (평가운영 조정) 사전에 계획한 학생평가가 어려울 경우 평가일정·지필평가 횟수·수행평가 반영 비율 조정 등을 전라북도교육청의 ‘학업성적관리 시행지침’의 범위 내에서 학교장이 판단

※ 수행평가를 적정시기에 수시로 실시하는 등 성적산출 근거자료 확보 노력 필요

※ 수립(변경)된 평가 계획은 평가 실시 전에 학생 및 학부모에게 안내

※ ‘오미크론 대응 2022학년도 1학기 중등 및 특수학교 학사운영 방안[학교교육과-2234(22’2.15.)]’에 따라 <학사운영유형1>은 학년·학급 단위 혼합 고사장, 모둠형 수행평가 활용이 가능하고, <학사운영유형2>의 경우 모둠형 수행평가를 자제하고 학년별 고사기간 분리 운영 권장

- (결시생 성적처리) 전라북도교육청 학업성적관리 시행지침 및 학교 학업성적관리규정에 따라 산출

- ① 등교중지로 평가에 응시하지 않은 학생은 결시 처리(인정점 부여)하는 것이 원칙임
- ② 고사 기간 중 **평가에 미응시하여 인정점을 부여하는 경우** 교사의 출결 대체 증빙자료 및 신속항원검사 보호자 확인서, 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는 인정하지 않으며, **의료기관(선별검사소 포함)의 검사결과서(PCR, 신속항원 검사, 진료확인서) 필수 확인** 단, 부득이하게 검사결과서 확인이 어려운 경우 선별진료소 방문확인서를 확인
 - ※ **확진자 급증으로 입원·격리 통지서는 문자 등으로도 통보되며 동거가족 대상 일괄 격리통지 가능**,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별도의 격리해제통지 없이 최초 통지된 격리통지서상의 격리해제일 자정(24시)이 도래하면 격리 해제로 봄(학생건강정책과-1361, 222.17.)
 - ⇒ 문자통보된 입원·격리 통지의 스캔본도 평가 시 출결증빙 자료로 활용 가능
- ③ 객관적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나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출결 처리와 별개로 학업성적관리 규정에 따라 인정점 부여

- (코로나19 의심증상자) 평가 응시를 위해 등교를 희망하는 경우 학교장은 지정의료기관 또는 자체 신속항원검사 도구의 검사결과(음성) 확인* 후 학생 등교 가능

* 결과통보 후 24시간이 되는 날의 자정까지 유효하며, 검사결과 확인방법은 학교 여건 등을 고려하여 적용 가능(신속항원검사 결과 보호자확인서, 음성확인서, 신속항원검사 도구 지참 등)

※ 확진 후 격리해제된 학생이, 최초 확진일로부터 45일 이내에 의심증상이 있으나 평가 응시를 위해 등교를 희망하는 경우, PCR 검사 및 신속항원검사에서 양성(단순 재검출)이 될 수 있으므로 신속항원검사를 실시하지 않고 등교 가능

- (코로나19 백신 접종) 평가 기간에 접종하지 않도록 하며 부득이 접종 시 이상반응 발생의 경우 출석인정결석 또는 질병결석에 따른 인정점 부여

《 평가 기간 중 코로나19 백신접종에 따른 평가 처리 및 증빙자료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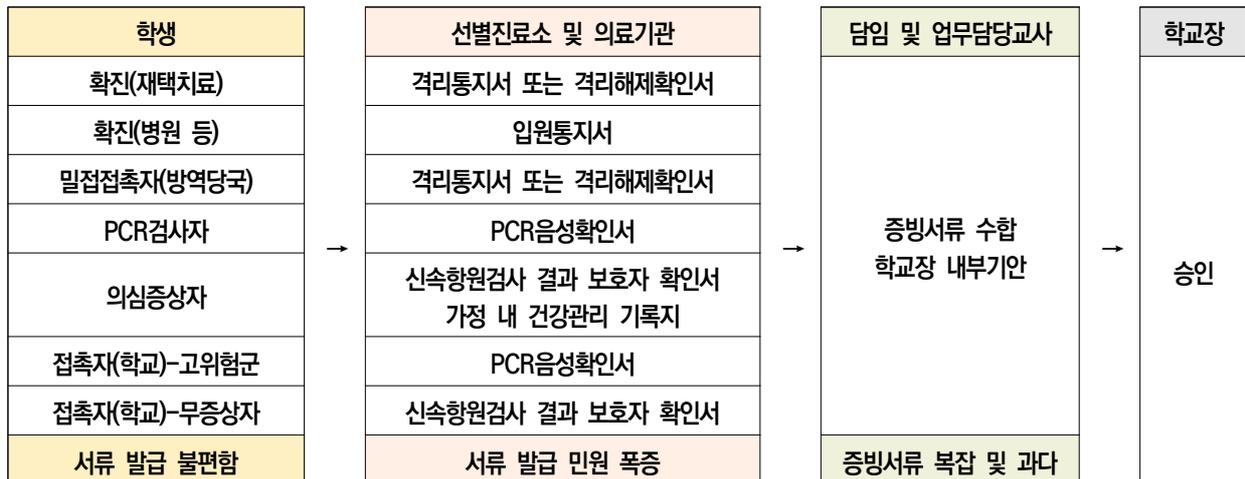
	접종일	접종 후 1일	접종 후 2일	접종 후 3일~
출결	출석인정에 따른 출결처리(결석·지각·조퇴·결과)			질병으로 인한 출결처리
평가	출석인정결석에 따른 인정점 부여 ※ 출석인정결석에 따른 인정점 부여는 ‘법정감염병 등으로 인한 결석’ 사유에 해당하므로, 임의변경 불가			질병결석에 따른 인정점 부여 ※ 임의변경 불가
평가 증빙 자료	예방접종내역확인서 또는 예방접종증명서	의사 진단서(소견서) 등		의사 진단서(소견서) 등

- ※ 코로나19 백신접종이 지필(수행)평가 기간 중에 이루어지지 않도록 유의
- ※ 평가 기간의 경우, 접종 후 1일과 2일의 경우에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 등을 확인하여 출석인정결석 처리함
- ※ 평가기간 중 증빙자료(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 등)가 없는 학생의 경우, 질병결석 인정점의 비율(80%)로 성적인정점 부여[교수학습평가과-7361(2021.11.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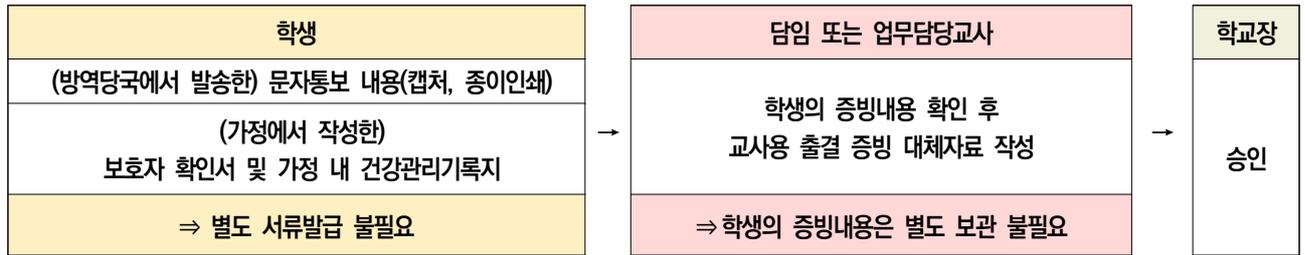
- (학생부 기록) 원격수업에서 교사가 학생의 수행 과정과 결과를 직접 관찰·확인한 경우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 가능하며, 직접 관찰·확인하지 못한 경우에는 기재 불가
 - 다만, 원격수업에서 직접 관찰·확인하지 못한 경우에도 등교수업과 연계하여 교사가 직접 관찰·확인한 학생 활동을 기재 가능

4. 코로나19 등교중지 대상 학생 출결 증빙서류 간소화 방안

가. (현행) 검사 실시 및 격리 대상자 확인을 위한 별도 서류 요청 및 발급으로 인한 학교 현장의 업무 부담 증가



나. (개선) 의료기관 → 학생(또는 보호자) 문자 통보 내역, 보호자 확인서 또는 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를 확인한 교사의 출결 증빙 대체자료 작성 후 학생 본인 최종 확인



※ 본 개선안은 학교 현장의 편의성 제고를 위한 것으로, 적용 여부는 학교장 재량이며, 단위학교 실정에 맞게 출결 확인서 기간 등 탄력적 운용 가능

※ 저연령 등 학생 본인의 최종 확인이 어려울 경우, 보호자 최종 확인 또한 가능

다. 적용 범위 및 기간

- (범위) 「학교보건법」 제8조, 「학교보건법시행령」 제22조 및 유·초·중등 및 특수학교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안내에 따른 등교중지 대상자로 한정함
- 코로나19 관련 등교중지가 아닌 모든 출석인정결석(가정학습, 국가대표 대회 및 훈련참가 등), 질병결석, 기타결석의 증빙서류는 이전과 동일함
- 2022학년도 학사운영 시작일부터 별도 지침 안내 전까지로 한정
- 평가 기간은 의료기관(선별진료소 포함)의 증빙자료 제출 방침 유지

- 지필 및 수행평가 미응시자에 대하여 전라북도교육청 학업성적관리지침 및 학교 학업성적관리규정에 따라 결시 이전·이후의 성적 또는 기타 성적의 일정비율을 환산한 성적(인정점)을 부여함

- 코로나19 등교중지로 인한 인정점은 100% 부여가 되고 있으므로, 평가의 신뢰도 및 공정성 제고를 위하여 평가 기간에는 엄격한 증빙서류 확인 필수

〈서식 1〉 : PCR 검사 대상 학교장 확인서

PCR 검사 대상 학교장 확인서

학교(유치원) 내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으로 학교(유치원) 자체조사에 따른
접촉자 중 '고위험 기저질환자' 대상 PCR 검사를 선별진료소에 의뢰

소속 기관명	(예시) 전일고등학교
검사 대상자	(예시) 1학년 1반 25번 홍길동

학교(유치원) 내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으로 학교(유치원) 자체조사에서 접촉자로
분류한 결과, PCR 검사 의뢰 대상 기준에 부합하여 검사를 의뢰합니다.

년 월 일

학교장(원장)

(관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출처: 유·초·중등 및 특수학교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안내 제6판 수정판

〈서식 3〉 :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음성확인서 - 보건소용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개인용) 음성확인서

성 명 (성 별) : ○ ○ ○ (남,여)

생 년 월 일 : YYYY-MM-DD

검 사 일 자 : YYYY-MM-DD

검 체 종 류 : 비강도말

검 사 방 법 : 신속항원검사(개인용)

검 사 결 과 : 음성

※ 유효 기 간 : 검사 결과 음성 확인부터 24시간이 경과한 날의 자정까지

상기 인에 대한 검사결과를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 보건소에서 발급된 음성확인서는 「감염병예방법」 제4조에 따라 코로나19 발생과 유행 방지와 방역을 위한 국내용 공익 목적으로 한정됩니다.

검 사 기 관 : ○ ○ ○ 보건소장

(인 또는 서명)

(TEL:00-000-0000)

※ 출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신속항원검사(개인용) 시행지침 지자체용 1-2판

〈서식 4〉 : 가정내 건강기록지

학년/반	학생 성명	보호자 성명	보호자 연락처

본인 또는 가족(동거인)의 해외여행력	여행자	여행일자	여행 국가

일자	월 일	월 일	월 일	월 일	월 일	월 일
가정에서 측정된 체온(℃) (또는 발열 여부)	정상	36.5				
(발열시 해열제 복용 여부)						
호흡기 증상 등 유무*	없음					
기타 증상 (두통, 권태감, 설사 등)	없음					
보호자 확인						

일자	월 일	월 일	월 일	월 일	월 일	월 일
가정에서 측정된 체온(℃) (또는 발열 여부)						
(발열시 해열제 복용 여부)						
호흡기 증상 등 유무*						
기타 증상 (두통, 권태감, 설사 등)						
보호자 확인						

* 기침, 호흡곤란, 인후통

※ 코로나19 임상증상이 발견되어 선별진료소를 방문하는 학생이 가정에서 매일 자기건강관리를 하는데 활용하며, 등교중지 된 학생의 경우에는 학교 복귀시 출결증빙용으로 제출

※ 학교 실정에 맞게 변경하여 사용

※ 출처: 유·초·중등 및 특수학교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안내 제5-2판

기본 시정표

교시	시간	비고
출석, 조회	08 : 20 ~ 08 : 25	담임교사
1교시	08 : 30 ~ 09 : 20	50분
2교시	09 : 30 ~ 10 : 20	
3교시	10 : 30 ~ 11 : 20	
4교시	11 : 30 ~ 12 : 20	
점심시간	12 : 20 ~ 13 : 15	55분
5교시	13 : 20 ~ 14 : 10	50분
6교시	14 : 20 ~ 15 : 10	
7교시	15 : 20 ~ 16 : 10	
청소, 종례	16 : 10 ~ 16 : 30	20분 (담당교사임장지도)
8교시	16 : 35 ~ 17 : 45	70분
저녁	17 : 45 ~ 18 : 40	55분
야자1	18 : 45 ~ 20 : 15	90분
쉬는시간	20 : 15 ~ 20 : 30	15분
야자2	20 : 30 ~ 22 : 00	90분

교 가

1절

모약산 곧은 의지를 한곳에 모아 / 학문의 전당이어라 배움의 광장
바르고 새로운 뜻을 스스로 세워 / 진리를 밝혀나간다 영광의 전일
의로운 천만의 역사 영원하리니 / 빛내자 우리의 자랑 전주 全一高

2절

성실한 문화의 민족 전통을 이어 / 찬란히 피어나가라 배달의 터전
알차고 참된 마음을 굳게 다지며 / 조국에 이바지하는 개척의 선봉
의로운 천만의 역사 영원하리니 / 빛내자 우리의 자랑 전주 全一高

급식 운영